

종합감사

감사보고서

- 2022년 한국벤처투자 종합감사 -

2023. 2.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

목 차

- I. 감사실시 개요 1

- II. 감사대상 기관 현황 2
 - 1. 일반현황 2
 - 2. 재무현황 3
 - 3. 모태펀드 예산축소 현황 및 분석 4

- III.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6
 - 1. 출자예산 배정 방식 개선 필요 6
 - 2. 한국벤처투자 “엔젤 모펀드” 관리보수 수취 구조 개선 필요 ... 11
 - 3. 정·현원 관리 부적정 등 인사운영 미흡 17
 - 4. 법령상 의무고용 준수 미흡 26
 - 5. 한국벤처투자 “성과급 지급” 관련 개선 필요 29
 - 6. 교육훈련비 집행 부적정 35

7. 초과근무수당 운영 부적정	40
8. 지역사무소 운영 부적정	43
9. 해외사무소 운영 부적절	49
10. 경영정보공시 관리 소홀	62
11. 외부강의 등 신고 부적정	65
12. 한국벤처투자 내부규정 개선 필요	68
13. 2018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이행 미흡	72
14. 수의계약 전자견적 미실시	76
1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 부적정	78
IV. 처분 요약	100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18년 최초 감사한 이후, 3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 모태펀드 운영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의 회계, 인사 등 기관운영과 정부 보조사업 집행현황 등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주기능 수행의 투명성·공정성 및 기관운영의 효율성·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종합감사로 인사·예산·계약·복무·징계 등 기관운영 뿐만 아니라 투자조합 선정 및 청산의 투명성, 출자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우선 실지감사에 앞서 2022. 11. 3.부터 같은 해 11. 8.까지 서면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같은 해 11. 9.부터 11. 23.까지 3주간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하여 관련 서류 검토와 담당자 면담 등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사실관계 추가 확인 및 검증 등을 위해 2022년 2월까지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 결과 확인된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고 한다)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23. 2. 24.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한국벤처투자는 '05년 6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현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07년 4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년 8월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거 법정기관화 되어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펀드')을 운영하고 있다.

모태펀드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천억원,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재정 4천억원으로 총 1조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결성 이후 기존 출자자의 추가 납입 및 신규 출자자 참여를 통해 '22년 기준 8조 2,153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운용기간은 30년으로 회수 자금은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되어, 중소·벤처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가능하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VC 글로벌 펀드를 '13년부터 조성하였으며, 미국·중국·싱가포르에 사무소를 개소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 및 유니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방 소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22년 8월 지역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R&D기술사업화에 기여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성장지원 펀드, 하이테크 기술개발 사업화펀드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의 조직은 '22년 11월 기준 6본부 1실 14팀 4사무소 1센터로 이루어져 있고, 인원은 정원 166명, 현원은 161명이다.

< [표 1] 임직원 현황 >

(단위 : 명)

구분	임원	책임 심사역	선임 심사역	심사역	공무직	별도정원	계
정원	3	14	61	69	18	1	166
현원	2	10	53	79	16	1	161

2. 재무현황

한국벤처투자의 자산총액은 '21년 결산 기준 1,070억원이고, 부채 161억원 및 자본금은 500억원, 자본총계는 909억원이다.

총부채 중 금융부채는 없으며, 연도말 기준의 미지급금, 사옥 임대차에 의한 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2]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상태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19년 결산	'20년 결산	'21년 결산
자산	유동자산	39,647	36,737	39,998
	창업투자자산	17,804	25,984	32,709
	비유동자산	34,047	32,607	34,286
	자산총계	91,498	95,328	106,993
부채	유동부채	2,606	2,580	13,765
	비유동부채	2,232	2,606	2,354
	부채총계	4,838	5,186	16,119
자본	기본재산	50,000	50,000	50,000
	기타	36,660	40,142	40,874
	자본총계	86,660	90,142	90,874

한국벤처투자의 '21년 결산 기준 영업수익은 354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1% 증가('20년 292억원)하였으며, '17년 이후 영업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¹⁾ 당기순이익은 '21년 일시적으로 반영한 충당금(미지급비용 및 부채)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52% 감소(△23억원)하였고, 부채는 전년 대비 109억원 증가하였으나 양호한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 [표 3] 연도별 당기순이익(최근5개년) >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당기순이익	10	53	48	45	22

< [표 4] 연도별 부채현황(최근5개년) >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40/780 (5.1%)	45/832 (5.4%)	48/867 (5.5%)	52/901 (5.8%)	161/909 (17.7%)

1) 영업수익 (억원): ('17) 166억원 → ('18) 229억원 → ('19) 249억원 → ('20) 292억원 → ('21) 354억원

3. 모태펀드 예산축소 현황 및 분석

확장재정에서 건정재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로 '23년도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 출자액 정부안은 '22년 예산 5,200억원 대비 2,065억원 감액(△39.7%)된 3,135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23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1,765억원이 감액된 2,835억원이 편성되었고,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모태조합 출자 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300억원이 감액된 300억원이 편성되었다.

'23년 정부안 3,135억원의 계정별 출자계획을 살펴보면 3,135억원을 출자하여 6,498억원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초격차, 창업초기, 중간회수, 스케일업·중견도약 등에 나누어 출자될 계획이다.

< [표 5] '23년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한 자펀드 조성계획 >

(단위 : 백만원)

계정명	분야명	정부출자예산액	결성규모	출자비율
중진	여성기업	13,000	21,700	60
중진	초격차	55,000	110,000	50
중진	스케일업·중견도약	35,000	70,000	50
중진	재도약	16,000	22,900	70
중진	지역혁신	33,000	66,000	50
중진	중간회수	35,000	70,000	50
중진	글로벌	23,500	117,500	20
혁신모험	창업초기	40,000	66,700	60
청년	청년창업	33,000	55,000	60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	30,000	50,000	60
합계		313,500	649,800	48.2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축소되었으나 이는 '22년 예산이 작년대비 50% 이상 감액된 점²⁾을 감안하면 점진적 감소 추세로 볼 수 있다. '17~'21년 한해 투입된

2) 중기부 소관 모태 예산 전년대비 감액 비율 : ('21년 대비 '22년) △51.4 → ('22년 대비 '23년) △39.7

본예산의 평균값은 4,140억원 수준이다.

< [표 6] '17~'22년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 출자액 >

(단위: 억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평균	'22년	합계
모태펀드 예산	8,300	4,500	2,900	10,000	10,700	7,280	5,200	41,600
본예산	300	2,000	2,400	8,000	8,000	4,140	5,200	25,900
추경	8,000	2,500	500	2,000	2,700	3,140	-	15,700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대비 모태펀드 예산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였을 때 벤처투자 시장에 지속적인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벤처투자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태펀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창업초기, 청년·여성, 지역 및 초격차 분야 등 정책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출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Ⅲ.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Ⅲ-1

출자예산 배정 방식 개선 필요

1. 업무 개요

한국벤처투자(이하 “벤처투자”라 한다.)는 「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관리규정」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출자사업의 공고 및 제안서의 접수’ → ‘1차심의’ → ‘2차심의’ 절차를 거쳐 모태펀드 자조합을 운용할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운용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있다. 이 때 1차심의는 서류심사(펀드운용 심사 및 준법성 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선정하고, 2차심의에서는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출심위”라 한다.)에서 구술 설명(프리젠테이션)을 하며, 1차심의 및 2차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출심위에서 최종선정 여부, 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및 모태조합 출자 상한액 등을 결정한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관리지침」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출심위는 운용기관별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운용기관을 대상으로 배정예산을 고려하여 각 심의회 의원의 합의에 따라 출자예산을 배정³⁾하고 운용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벤처투자가 실시한 모태펀드 2021년 1차 정시 출자사업 선정결과를 살펴보

3) 예산배정 방식은 높은 점수를 취득한 운용기관이 낮은 점수를 취득한 운용기관에 비해 동등하거나 유리하도록 조정하여 적용한다.(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관리지침 제13조제3항)

면, 총 134개 신청조합 중 73개 조합이 1차심의를 통과하였고, 2차심의 결과 최종 39개 조합이 선정된 바 있다.

이때, 선정된 조합별 모태펀드 출자 요청금액 대비 선정금액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출자예산을 배정하였다.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운용기관 중 ①점수 순으로 모태펀드 요청액 전액을 출자예산 배정하다가 부족분 발생 시 마지막 순위 기관 요청액을 감액 조정한 후, 차순위 기관은 예산소진으로 탈락 처리[표 1]하거나, ②요청액 대비 출자액 비율로 선정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감액 조정한 후, 차순위 기관은 예산소진으로 탈락 처리[표 2]하거나, ③1순위 기관에 출자예산 전액을 배정한 후, 차순위 기관은 예산소진으로 탈락 처리([표 3])한 사례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표 1] 마지막 순위 기관의 출자예산을 감액 조정한 사례 >

(단위: 억원)

계정 / 지원분야	GP명	신청현황		선정결과		평가 점수	선정 결과	비율 (B/A)
		총액	요청액 (A)	총액	출자액 (B)			
소재부품장비 계정 / 소재부품장비 (일반)	A	500	250	500	250	80.39	선정	100%
	B	300	180	300	180	78.18	선정	100%
	C	295	175	287	170	75.48	선정	97%
	D	610	300	-	-	74.28	탈락	-
	E	400	240	-	-	73.77	탈락	-
	F	300	150	-	-	71.20	탈락	-
	G / H	300	180	-	-	73.75	탈락	-
	(6개사, 생략)							
합계		4,408	2,445	1,087	600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 재구성

< [표 2] 요청액 대비 출자액 비율로 감액 조정한 사례 >

(단위: 억원)

계정 / 지원분야	GP명	신청현황		선정결과		평가 점수	선정 결과	비율 (B/A)
		총액	요청액 (A)	총액	출자액 (B)			
혁신모형 / 창업초기 일반	I	170	100	128	75	74.68	선정	75%
	J	160	80	96	48	74.33	선정	60%
	K	400	200	154	77	74.24	선정	39%
	L	400	200	-	-	73.10	탈락	-
	(21개사, 생략)							
합계		5,623	3,065	378	200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 재구성

< [표 3] 1순위 기관에 출자액 전액을 배정한 사례⁴⁾ >

(단위: 억원)

계정 / 지원분야	GP명	신청현황		선정결과		평가 점수	선정 결과	비율 (B/A)
		총액	요청액 (A)	총액	출자액 (B)			
혁신모형 / 창업초기 (벤처투자조합 루키)	M	334	200	334	200	77.08	선정	100%
	N	200	100	-	-	75.84	탈락	-
	O	180	90	-	-	73.40	탈락	-
	P	167	100	-	-	72.76	탈락	-
	(13개사, 생략)							
합계		3,174	1,710	334	200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 재구성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벤처투자가 실시한 모태펀드 2021년 1차 정시 출자사업 선정결과 중 ⁴⁾운용기관 요청액 대비 출자액을 높여 배정한 경우[표 4]도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이해를 돕기 위해 [표3]의 경우는 '21.2차 정시 출자사업 결과를 인용

< [표 4] 요청액 대비 출자액을 높여 배정한 사례 >

(단위: 억원)

계정 / 지원분야	GP명	신청현황		선정결과		평가 점수	선정 결과	비율 (B/A)
		총액	요청액 (A)	총액	출자액 (B)			
중진계정 / 스마트 대한민국 (비대면루키)	Q	400	160	400	180	76.51	선정	113%
	R	300	90	300	100	71.68	선정	111%
	S	500	200	450	180	70.62	선정	90%
	T	200	80	100	40	66.65	선정	50%
	U	300	120	-	-	66.54	탈락	-
	(8개사, 생략)							
합계		3,220	1,243	1,250	500			

당시 정책펀드의 적극적 역할 강화로 투자 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정부 대책⁵⁾ 내용 중 출자비율 상향(최대 +10%p) 등 인센티브 대책에 맞게 실시하였다고 담당자는 진술하였으나, '21년 총 29개 운용사가 조기에 투자하는 조건을 달성하고 출자비율 상향의 인센티브를 신청하였고, 이 중 12개 운용사가 최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비율을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한 사례는 단 1회(2개 운용사)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출심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운용기관에 대한 출심위 의원의 질의·응답과 출자예산 배정 결과만이 작성되어있고, 출자액 조정에 이르는 과정 및 사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 유형과 같이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출심위에서 출자예산 배정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최종 선정기관이 변경될 여지가 매우 크고, 특히 출심위 의장은 대표이사로 구성되어 대표이사의 의지에 따라 출심위의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0.4.8)」에 따라 당해연도 신규 결성액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차년도('21년)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상향(최대 +10%p)하여 출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감사결과, 출자심의위원회 모태출자비율 조정 방법 개선('18.12)을 통해 출심위의 출자액 조정과 관련한 규정을 구체화할 것과 출자액 조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러한 요구에 따른 규정개정('18.4, '19.7 이후⁶⁾)에도 이와 유사한 선정 및 출자 예산 배정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대외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관계기관 의견】

벤처투자는 중기부 장관의 승인을 거친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라 출심위 운영 시 출심위 의원의 합의를 통해 출자예산과 조합결성 예상금액 등을 고려하여 출자금을 배정하도록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향후 출자사업 공고시 예산배정 등을 공고문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출자사업 선정결과 공지 시 운용기관과 기관별로 배정된 출자예산을 같이 공개토록 하고, 출심위 회의록 작성 시 출자액 조정의 사유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는 등 운용기관 선정 및 출자예산 배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6) 「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관리지침」

- ('17.5.30. 이전)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운용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을 고려하여 조합 성격별 동일분야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을 배정”

→ ('18.4.19 개정) “산출된 점수가 60점 이상인 운용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을 고려하여 조합성격별 동일분야 내에서 각 심의회 의원의 합의에 따라 예산을 배정”

→ ('19.7.12 개정) “단, 예산배정 방식은 높은 점수를 취득한 운용기관이 낮은 점수를 취득한 운용기관에 비해 동등하거나 유리하도록 조정하여 적용” 추가

1. 업무 개요

한국벤처투자(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 KVIC)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인 한국모태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조합(한국모태펀드)의 운영과 조합재산의 관리·운용·분배 등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며 그에 대한 관리보수를 수취하고 있다.

또한 한국벤처투자(KVIC)가 업무집행조합원(GP)이 되고 “한국모태펀드” 자체가 유한책임조합원(LP)이 되는 별도의 출자 또는 투자 사업을 통해서도 관리보수를 수취 하거나 해왔으며 그 중 “엔젤 모펀드(Angel Fund of Fund)”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보수를 수취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에 의하여 결성된 벤처투자모태조합인 『한국모태펀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중소벤처기업부)”⁷⁾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규약(업무집행조합원 한국벤처투자)”⁸⁾에 근거하여 관리보수를 수취하도록 규정 돼 있다.

“엔젤 모펀드(Angel Fund of Fund)” 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약⁹⁾에서

- 7) 2022년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 제3조(모태조합 운용계획) ① 한국벤처투자는 지침에 근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작성하고, 지침 및 운용계획에 따라 모태조합을 성실히 운용하여야 한다. ② 모태조합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8 기준수익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지급 기준.
- 8) 벤처투자모태조합 규약 제4조(용어의 정의). 18. “관리보수”라 함은 조합운영에 필요한 일반경비 등 기본경비를 포함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 운영에 대한 보수로 지불하는 고정수수료를 말한다.
- 9) 엔젤 모펀드 규약 제27조(관리보수) ① 조합은 존속기간 중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납입 출자금 총액에 대해 년 1,0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관리보수로 지급한다.

관리보수 수취 규정을 두고 있다. (“엔젤 모펀드” 사업은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위한 모펀드로 '15년 11월 결성 때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한국벤처투자(KVIC)는 한국모태펀드(조합) 결성과 조합재산의 관리·운용·분배 등의 업무를 담당(업무집행조합원, GP)하며, 그에 대한 관리보수로 2021년 기준 납입출자총액 7,277,476 백만원에 대한 관리보수 30,592 백만원을 수취하였다. ([표 5] 참조)

< [표 5] 한국모태펀드 재무 및 관리보수 지급 현황 (단위:백만원) >

	자산		부채	출자금 ¹⁰⁾	관리보수료 11)	총 예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중기부 계정
15년	729,404	1,768,672	11,532	2,230,176	11,395	396,076 (202,000)
16년	739,071	1,962,087	12,386	2,443,176	12,245	213,000 (100,000)
17년	1,412,339	2,299,373	14,536	3,418,176	14,172	975,000 (830,000)
18년	1,583,604	2,844,702	10,096	4,029,676	18,270	611,500 (450,000)
19년	1,288,642	3,654,487	20,891	4,521,676	20,463	492,000 (290,000)
20년	1,720,129	4,736,045	25,252	5,848,176	24,821	1,326,500 (1,000,000)
21년	2,257,122	6,476,523	21,385	7,277,476	30,592	1,429,300 (1,070,000)
22년 6월	2,635,132	6,754,035	33,630	8,097,864	17,013	937,800 (520,000)

10) 출자금(누적) : 자본금 항목

11) 관리보수료 : 납입출자총액 × 관리보수율(벤처투자모태조합 규약 제28조)

위와 같이 한국벤처투자(KVIC)는 “한국모태펀드” 관리·운용·분배 등에 대한 관리보수를 이미 수취하고 있으나, “한국모태펀드”가 거의 대부분을 출자하는 별도의 조합(펀드)에 대해서도 관리보수를 수취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성장지원(Scale-up) 펀드(’18년 8월 결성)” 및 “해외 VC 글로벌 펀드(1호-’13년 9월, 2호-’16년 7월 결성)” 등의 경우, 조합 구성원 및 출자 비율은 아래 [표 6], [표 7] 과 같으나¹²⁾ 한국벤처투자(KVIC)는 “한국모태펀드”에 대한 관리보수와는 별개로 별도의 관리보수를 수취해 왔다.

< [표 6] 일자리 창출 성장지원 펀드 조합원 구성 >

	조합원명	출자금액	출자비율	비고
1	한국모태펀드	500억원	98.81%	특별조합원
2	한국벤처투자	6억원	1.19%	업무집행조합원(GP)
계		506억원	100%	

< [표 7] 해외VC 글로벌 펀드(1호) 조합원 구성 >

	조합원명	출자금액	출자비율	비고
1	한국모태펀드	1,340.5억원	99%	특별조합원
2	한국벤처투자	13.5억원	1%	업무집행조합원(GP)
계		1,354.0억원	100%	

12) 한국모태펀드(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합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집행조합원	한국벤처투자
2. 유한책임조합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투자(KVIC)의 전체 관리보수 수취 현황은 다음 페이지 [표 9]와 같다. 그런데 이들 펀드는 최근 조합규약 개정을 통해 “일자리 펀드”는 '20년 7월부터¹³⁾, “해외VC 펀드”는 '21년 2월부터¹⁴⁾ 관리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들 펀드의 운용에 관해 확인 가능한 조합원총회 회의록¹⁵⁾을 살펴보면 이미 “한국모태펀드”로부터 관리보수를 수취하고 있고, 한국모태펀드와는 달리 조합원이 둘(한국모태펀드<관리기관 한국벤처투자(KVIC)> 및 한국벤처투자(KVIC)) 뿐인 조합(펀드)에서 별도로 관리보수를 수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구성이 “일자리 펀드” 및 “해외VC 펀드”와 동일한 “엔젤 모펀드(Angel Fund of Fund) [표 9]” 사업에서는 여전히 “한국모태펀드”에서와는 별도로 관리보수를 수취하고 있어 공정성(관리보수의 중복수령) 내지는 타 사업(일자리 펀드, 해외VC 펀드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된다.

< [표 8] 엔젤 모펀드 조합원 구성 >

	조합원명	출자금액	출자비율	비고
1	한국모태펀드	732.0억원	99%	특별조합원
2	한국벤처투자	7.6억원	1%	업무집행조합원(GP)
	계	739.6억원	100%	

13) 일자리 창출 성장지원 펀드 임시 조합원총회 개최의 건(한국벤처투자 혁신투자팀-689, '20년 6월 24일)

14) 해외VC 글로벌 펀드 2호, 1호, 2021년 제1차 임시 조합원총회 개최의 건(한국벤처투자 글로벌투자팀-80, -85, '21년 2월 2일 및 '21년 1월 28일)

15) 해외VC 글로벌 펀드의 경우, 위 각주 7)의 “조합규약 변경의 건” 관련 개정 사유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지시사항에 따라 별도 관리보수를 받지 않기로 함”으로 기록돼 있다.

< [표 9] 한국벤처투자(KVIC) 재무 및 관리보수 수취 현황 (단위:백만원) >

	자산			관리보수료		당기 순이익	총 급여 (인원 수)	
	유동	창업투자	비유동					
15년	34,522	12,735	33,808	12,566	모태	11,395	1,717	4,975 (70)
					글로벌	-		
					일자리	-		
					엔젤	-		
16년	28,908	14,301	38,033	13,619	모태	12,245	1,678	5,463 (73)
					글로벌	510		
					일자리	-		
					엔젤	49		
17년	27,815	17,622	6,611	15,582	모태	14,172	953	6,016 (99)
					글로벌	635		
					일자리	-		
					엔젤	98		
18년	35,411	16,919	35,361	20,035	모태	18,270	5,301	7,274 (115)
					글로벌	918		
					일자리	190		
					엔젤	137		
19년	39,646	17,804	34,047	23,272	모태	20,463	4,832	8,331 (113)
					글로벌	1,342		
					일자리	507		
					엔젤	167		
20년	36,737	25,984	32,607	27,673	모태	24,821	4,530	8,899 (126)
					글로벌	1,595		
					일자리	250		
					엔젤	222		
21년	39,998	32,709	34,286	31,779	모태	30,592	2,178	11,266 (140)
					글로벌	119		
					일자리	-		
					엔젤	222		
22년 6월	42,665	34,688	34,063	17,577	모태	17,013	6,774	5,459 (154)
					글로벌	-		
					일자리	-		
					엔젤	111(예정)		
					기타	453		

【관계기관 의견】

한국벤처투자는 “엔젤 모펀드” 사업의 관리보수 수취가 “한국모태펀드” 운용에 관한 관리보수 수취와 중복됨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엔젤 모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보수 중복수취(한국모태펀드 운용에 관한 관리보수 외에 한국모태펀드와 한국벤처투자(KVIC)가 출자하여 구성된 조합(펀드)으로부터 다시 관리보수 수취)가 없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1. 업무 개요

한국벤처투자는 「직제규정」, 「직제지침」, 「인사규정」, 「직무전결규정」, 「근무평정시행지침」, 「승진지침」에 따라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여 직원의 승진, 직무대리 등 기관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직원의 승진은 승진지침에 따라 승진소요년수, 필수교육 이수, 업무역량과 업적,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매년 1회 개최한다.

본부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정할 수 있고 상급자 유고 시 직제순서에 따라 하위직급이 직무대리를 한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임직원의 선임·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제6조의2에 따라 증원의 절차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따라서 한국벤처투자는 직급별 정원 및 현원을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기능 및 업무량 등에 맞춰 균형있게 조정하고 특정 직급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정원과 현원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기관정원 및 현원관리 부적정

한국벤처투자 '22년 9월말 알리오 공시기준 임직원 정·현원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수시증원 요구 및 검토 등 매년 정원관련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직제규정」에 별표 정원표에 따라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2019년~2022년 동안 한국벤처투자의 정원·현원 변동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20년 정원이 113명에서 144명으로 31명*(27%) 순증으로 대규모 확대되었다.

* 책임심사역(10명 → 14명), 선임심사역(42명 → 61명), 심사역(57명 → 69명)

< [표 10] 한국벤처투자 직급별 정·현원 (단위:명) >

구분	계	임원	책임 심사역	선임 심사역	심사역	별도 정원	무기 계약직
정원	166	3	14	61	69	1	18
현원	158	2	10	53	79	1	16
과부족	8	1	4	8	-10	0	2

책임심사역 경우 2019년 6월 정·현원 일치상태이다가 2020년 1월 이후 14명 정원대비 5명 부족(36%)상태가 3년간 유지되었고 2022년 1월 1명이 승진되어 현재 정원 14명에 현원 10명으로 4명이 불일치 상태이다.

선임심사역 경우 2019년 1월 42명 정원대비 5명 부족 상태가 2019년 12월 9명 부족(21%) 상태로 증가하였고, 2020년 1월 이후 정원이 확대되어 61명 정원에 20명 부족(33%) 상태까지 증가하였다가 현재 정원 61명에 현원 53명으로 8명이 불일치 상태이다.

심사역 경우 2019년 1월 57명 정원대비 2명 부족 상태에서 2020년 1월 이후

정원이 확대되어 65명 정원에 15명 부족(23%) 상태에서 2022년 2월 22명 부족(32%)까지 증가하였다가 2022년 3월과 9월에 신규 채용을 통해 현재는 정원 69명에 현원 79명으로 10명이 불일치 상태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전직급에 있어서 정원과 현원 비율이 일치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책임심사역, 선임심사역 경우 2020년 이후 3년간 계속 정원·현원의 불일치가 지속되는 상태로 기관 정원·현원을 관리하고 있다.

< [표 11] 한국벤처투자 직급별 정·현원 비교표 (단위:명) >

2019년	1월			6월			9월			12월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임원	3	2	1	3	2	1	3	3	0	3	3	0
책임심사역	10	11	-1	10	10	0	10	10	0	10	10	0
선임심사역	42	37	5	42	33	9	42	34	8	42	33	9
심사역	57	55	2	57	62	-5	57	62	-5	57	61	-4
무기계약직	1	1	0	1	1	0	1	1	0	1	1	0
2020년	1월			6월			9월			12월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임원	3	3	0	3	3	0	3	3	0	3	3	0
책임심사역	14	9	5	14	9	5	14	9	5	14	9	5
선임심사역	61	41	20	61	40	21	61	46	15	61	46	15
심사역	65	50	15	65	48	17	65	64	1	65	63	2
무기계약직	1	1	0	1	1	0	1	1	0	1	1	0
2021년	1월			6월			9월			12월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임원	3	3	0	3	3	0	3	3	0	3	3	0
책임심사역	14	9	5	14	9	5	14	9	5	14	9	5
선임심사역	61	52	9	61	48	13	61	48	13	61	52	9
심사역	69	56	13	69	52	17	69	52	17	69	57	12
무기계약직	18	1	17	18	16	2	18	15	3	18	14	4
2022년	1월			6월			9월			12월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임원	3	3	0	3	2	1	3	2	1	/		
책임심사역	14	10	4	14	10	4	14	10	4			
선임심사역	61	54	7	61	53	8	61	53	8			
심사역	69	50	19	69	65	4	69	79	-10			
무기계약직	18	17	1	18	17	1	18	16	2			
별도정원	1	0	1	1	1	0	1	1	0			

나. 상위직급 현원 부족

한국벤처투자는 2019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승진을 실시하였다. 3년동안 이 사대우로 2명 승진, 부장으로 1명 승진, 차장으로 11명 승진, 과장으로 19명 승진, 대리 25명 총 58명이 승진하였다.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은 19년 승진 TO 1자리에 0명, 20년 승진 TO 5자리에 0명, 21년 승진 TO 5자리에 1명, 22년 승진 TO 5자리에 0명 승진이 추진되었다. 4년간 누적 TO 16자리에 1명 승진(6%)이 이루어졌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은 TO 제한없이 전원 승진 가능함에 따라, 19년 승진 TO 14자리에 4명, 20년 승진 TO 15자리에 4명, 21년 승진 TO 10자리에 3명, 22년 승진 TO 21자리에 0명 승진이 추진되었다. 4년간 누적 TO 60자리에 11명 승진(18%)이 이루어졌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은 19년 승진 TO 9자리에 9명, 20년 승진 TO 15자리에 6명, 21년 승진 TO 9자리에 4명, 22년 승진 TO 8자리에 0명 승진이 추진되었다. 4년간 누적 TO 41자리에 19명 승진(46%)이 이루어졌다.

< [표 12] 한국벤처투자 승진 TO 현황 (단위:명) >

(2019.12.31 기준)

직급	직위	'19 정원	현원		승진대상	승진 TO	승진	잔여 TO
책임심사역	이사대우	10	9	5	-	-	-	-
	부장		(-1)	4	1	제한없음	1	제한없음
선임심사역	차장	42	33	13	6	1	-	1
	과장		(-9)	20	14	제한없음	4	제한없음
심사역	대리	57	61	34	18	9	9	-
	사원			27	15	제한없음	9	제한없음
계		109	103		54	-	23	-

(2020.12.31 기준)

직급	직위	'20 정원	현원		승진대상	승진 TO	승진	잔여 TO
책임심사역	이사대우	14	9	6	-	-	-	-
	부장		(-5)	3	2	제한없음	1	제한없음
선임심사역	차장	61	46	16	10	5	-	5
	과장		(-15)	30	15	제한없음	4	제한없음
심사역	대리	65	66	32	16	15	6	9
	사원		(+1)	34	11	제한없음	8	제한없음
계		140	121		54	-	19	-

(2021.12.31 기준)

직급	직위	'21 정원	현원		승진대상	승진 TO	승진	잔여 TO
책임심사역	이사대우	14	9	7	-	-	-	-
	부장		(-5)	2	1	제한없음	-	제한없음
선임심사역	차장	61	52	18	9	5	1	4
	과장		(-9)	34	10	제한없음	3	제한없음
심사역	대리	69	60	35	15	9	4	5
	사원			25	8	제한없음	8	제한없음
계		144	121		43	-	16	-

(2022.9.30 기준)

직급	직위	'22 정원	현원		승진대상	승진 TO	승진	잔여 TO
책임심사역	이사대우	14	10	7	-	-	-	-
	부장		(-4)	3	2	제한없음	-	제한없음
선임심사역	차장	61	53	18	12	5	-	5
	과장		(-8)	35	21	제한없음	-	제한없음
심사역	대리	69	79	31	14	8	-	8
	사원		(+10)	48	13	제한없음	-	제한없음
계		144	141		62	-	-	-

다. 결임 및 직무대리 기간 과다(최장 10개월)

한국벤처투자는 본부장 공석 등으로 전결권자 유고가¹⁶⁾ 발생한 경우에 「인사규정」 및 「직무전결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을 직위 순으로 지정하되 직무상 공백 최소화라는 동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고 직원의 현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¹⁷⁾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6) 중앙인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해설집에서는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와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음

한국벤처투자는 감사대상기간 동안 겸임과 직무대리를 총 13회를 실시(2개월 이상)하였다. 그런데 한국벤처투자는 직무대행을 지정함에 있어 겸임과 직무대리를 혼동¹⁸⁾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특정 1인에게는 2회에 걸쳐 19개월이나 직무대리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겸임 경우 A본부장 공석 사유로 ◯◯◯ 본부장 경우 2019년 5개월 동안, 중국센터장 공석 사유로 ◻◻◻ B본부 부장 경우 2020년 10개월 동안 겸직을 실시하는 등 2개월 이상 겸직을 9회 실시하였다.

직무대리 경우 본부장 공석 사유로 ▷▷▷ 차장 경우 2019년 9개월간, 2022년 10개월 이상 직무대리를 하는 등 3개월 이상 직무대리를 4회 실시하였다.

< [표 13] 한국벤처투자 겸임현황 >

겸임기간	성명	본직				겸임직위			겸임사유
		원소속	직급	직위	담당업무	직급	직위	담당업무	
'19.07.08 ~'19.11.18		투자운영 본부	책임 심사역	이사대우	본부장	책임 심사역	이사대우	글로벌 본부장	본부장 공석
'20.02.24 ~'20.12.31		글로벌 성장본부	책임 심사역	부장	센터장	책임 심사역	부장	중국 센터장	본부장 공석
'21.01.01. ~'21.08.31.		엔젤투자 본부	책임 심사역	이사대우	본부장	책임 심사역	이사대우	글로벌 성장본부장	본부장 공석
'21.03.25 ~'21.05.03		벤처 투자팀	선임 심사역	차장	팀장	선임 심사역	차장	중국 센터장	중국센터장 공석
'21.05.03 ~'21.08.31		글로벌투 자팀	선임 심사역	차장	팀장	선임 심사역	차장	중국 센터장	중국센터장 공석
'21.09.01 ~'22.04.13		글로벌 성장본부	책임 심사역	부장	본부장	책임 심사역	부장	글로벌 투자팀장	팀장 공석
'21.09.01 ~'21.12.31		업무 지원팀	선임 심사역	차장	팀장	선임 심사역	차장	중국 센터장	중국센터장 공석
'22.04.13 ~'22.06.30		혁신 투자2팀	선임 심사역	차장	팀장	선임 심사역	차장	글로벌 투자팀장	인병휴가자 직무대리
'22.04.13 ~'22.07.12		혁신투자 본부	책임 심사역	이사대우	본부장	책임 심사역	이사대우	글로벌 성장본부장	인병휴가자 직무대리

※ 겸임 2개월 이상인 자

17) 부서장 결원 보충 시 해제

18) 한국벤처투자는 겸임 및 직무대리를 지정하면서 「직무전결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혼동하여 해석한 측면이 있었다고 진술

< [표 14] 한국벤처투자 직무대리 현황 >

직무대리기간	성명	본직			직무대리직위			직무대리사유
		직급	직위	담당업무	직급	직위	담당업무	
18.09.10.~ 19.01.01.		선임 심사역	과장	경영지원팀 팀원	좌동	좌동	경영 지원팀 팀장	인사이동에 따른 경영지원팀장 결원 발생
19.03.21.~ 19.10.10.		선임 심사역	차장	준법지원팀 팀장	좌동	좌동	준법서비스 본부장	전임 본부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됨에 따른 결원 발생
19.11.19.~ 20.02.24.		선임 심사역	차장	글로벌투자팀 팀장	좌동	좌동	글로벌 본부장	인사이동에 따른 글로벌본부장 결원 발생
22.01.01.~ 현재		선임 심사역	차장	준법서비스팀 팀장	좌동	좌동	준법서비스 본부장	전임 본부장 임기만료 퇴임에 따른 결원발생

※ 직무대리 3개월 이상인 자

라. 준법감시인 비정상적인 운영 발생(지원인력 공백, 업무 중복 등)

한국벤처투자는 준법감시 및 투자자 보호업무를 위해 준법감시 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조직으로는 준법감시인과 준법서비스본부로 이원화하여 구성하고 총 14명(준법감시인, 본부장, 팀장 및 부서원 12명)의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준법감시인과 준법서비스 본부의 업무 분장은 내부규정¹⁹⁾ 상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업무로 분장하고 있다. 다만 직무전결규정 상에는 준법감시인 관련 규정은 없고 준법업무를 리스크관리로 표현하여 본부장 또는 대표이사 전결로 규정²⁰⁾하고 있다.

19) 준법감시인 & 준법서비스본부 업무분장

준법감시인(직제규정 제6조)	준법서비스본부 업무분장(직제지침 제9조 별표)
제6조(준법감시인) 회사에는 내부통제를 총괄하도록 준법감시인을 두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기획 입안과 임직원 교육 2.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또는 시정요구 3. 이사회에 임원에 대한 지원 및 자문 4. 임직원 행동강령 제·개정 및 교육 5. 민원 관련업무 및 기록유지	1. 회사전반 및 투자자산의 리스크관리 계획의 수립 2. 모태조합 운용지침 및 운용계획 준수여부 모니터링 3. 기준규약의 제정, 심사 4. 출자조합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5. 회사 투자자산에 대한 운용점검 6. 리스크관리회의 운영 7. 소송 및 법률자문 관련 업무 8. 수탁기관 지정 및 관리 9. 출자사업 준법성 심사 10. 창투자평가 업무 수행 11. 정부기관의 창투자 등의 검사 및 펀드운용상황 점검 지원

다만 한국벤처투자는 2022.3.17. 개방형 공고로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관리, 벤처캐피탈 시장 모니터링 및 리스크관리 업무로 책임심사역을 선발하였고 2022.6.1.일자 내부 발령으로 준법감시인으로 신규 임명하였다.

하지만 리스크관리 업무를 준법본부장과 중복 분장²¹⁾해 놓고도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규정 미흡에 따라 본부장(직무대리)이 준법감시인과는 무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는 준법본부장(직무대리)이 업무 전반을 수행한 후 대표에 직보하고, 모니터링 결과 등 극히 일부사항만 준법감시인을 경유하며 준법감시인은 소속직원이 없이 단독으로 업무수행하고, 본부장이 직원들을 지휘하면서 모니터링 결과 등 사안 발생시에만 준법감시인을 경유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2018.6.1일부터 2022.5.31.일 까지 준법감시인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준법서비스본부장 또는 준법서비스팀장의 직책을 맡으면서 준법감시인으로 겸직 임명되어 직책의 비효율을 방지하였지만 현재는 준법서비스본부장이 10개월 공

20) 직무전결규정 제2조(전결기준) ① 대표이사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전결하는 자(이하 "전결권자"라 한다)는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결권을 가진다.

[별표] 전결사항

기능별	업무분장	대표이사	전결권자		
			본부장	실장	팀장
리스크관리	1. 회사전반 및 투자자산 리스크 제도 기획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	○		
	2. 리스크관리회의 운용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	○		
	3. 창투자 평가 및 정기점검		○		
	5. 법률 자문				○
	6. 기준규약 및 기준투자계약서 제·개정	○			
	7.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21) 한국벤처투자 000 경우 내부통제제도(준법감시인 담당)와 투자자산 리스크관리(준법본부장 담당) 업무는 사실상 동일한 업무 → 동업업무 중복 분장이라고 확인함

준법감시인 업무(직제규정)	준법서비스본부장 업무(직제지침 별표)
내부통제제도 기획, 운영실태 모니터링, 사내 행동강령 및 민원	투자자산 리스크관리, 모태조합 운용지침 준수 관리, 출자사업 준법성 심사, 창투자 점검 등

석 상태임에도 전임 준법감시인과는 상이하게 직책(직위)이 부여되지 않는 상태
 며 지원인력도 없는 상태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타 기관²²⁾과 비
 교해도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볼 수 있다.

< [표 15] 한국벤처투자 준법감시인 현황 >

기간	준법감시인(성명)	직책
2018.6.1.~2019.3.20		준법서비스본부장
2019.3.21.~2019.7.31		준법서비스본부장 직무대리
2019.8.1.~2020.12.27		준법서비스팀장
2020.12.28.~2022.1.4		준법서비스본부장
2022.1.5.~2022.5.31		준법서비스본부장 직무대리
2022.6.1.~현재		-

【관계기관 의견】

한국벤처투자는 기관특성과 인력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방식
 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께서는

특정 직급의 정원 및 현원에 과도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단(전
 문가 의견) 등을 통해 직급별 정원·현원 차이를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
 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직무대행은 부서장 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직제·직위 순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또한 준법감시 관련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
 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22) 타 기관 사례

- (A캐피탈) 준법감시인(상무이사, 비등기 임원)의 지휘하에 준법지원단(부장포함 직원 9명)을 두고 준법감시 관련업무 총괄
- (B캐피탈) 준법감시인(본부장, 임원급)의 지휘하에 준법지원부(부장포함 직원 6명)을 두고 준법감시 관련 업무를 총괄

1. 업무 개요

한국벤처투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다. 2022.9월 상시근로자 161명 조직으로서 법령상 고용준수의무를 준수하며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을 부과하고 있다.

< [표 16]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위:%) >

기준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 및 지자체	3.2%	3.4%	3.4%	3.4%	3.6%
공공기관	3.2%	3.4%	3.4%	3.4%	3.6%
민간기업	3.1%	3.1%	3.1%	3.1%	3.1%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3조의2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전체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고용이 필요하며,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금융서비스업종이며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8% 의무를 지닌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이번 종합감사 기간 내 한국벤처투자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 보면 4년 계속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4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54,563천원 이다.

< [표 17] 연도별 장애인 근로자현황 (단위: 명, %) >

기준연도	상시근로자	고용의무인원(A)	장애인근로자수(B)	년도말고용률
2019년	110명	3명	2명	67%
2020년	123명	4명	2명	50%
2021년	137명	4명	4명	100%
2022년	161명	5명	4명	80%

< [표 18] 연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단위: 천원) >

기준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부담금	11,083천원	12,198천원	17,232천원	14,050천원

또한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의무고용비율 달성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은 없는 상태이다.

< [표 19] 연도별 취업보호(지원)대상 채용현황(단위: 명, %) >

년도	총인원	법정인원(A)	취업인원(B)	취업률(B/A)
2018	96명	8명	7명	0.88%
2019	107명	9명	7명	0.78%
2020	109명	8명	6명	0.75%
2021	133명	10명	6명	0.60%

【관계기관 의견】

한국벤처투자는 우대가점제도 운영(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채용홍보 및 지원자 모집 등 채용 시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채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 진행하였다. 공공기관으로서 블라인드·공정채용 원칙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정 유형의 지원자 채용을 위한 적극적 고용조치가 어려웠으나, 의무고용비율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께서는

앞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 업무 개요

한국벤처투자는 「급여규정」, 「성과급지급지침」, 「근무평정시행지침」에 따라 성과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조 및 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재무건전성 확보, 국민 부담의 최소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벤처투자는 공공기관은 경영목표, 업무 및 조직구성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가치·능력·성과 등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한국벤처투자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종류는 펀드운영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이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매년 3회성과급을 결정하여 4회에 걸쳐 지급(7월, 10월, 12월, 익년 3월)하는 체계이다. 성과급 중 펀드운영성과급 경우 직원들의 동기 유인차원에서 2021년 신설하였고, 내부평가성과급의 경우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으며 나머지 성과급은 예비비로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 [표 20] 한국벤처투자 성과급 종류 (단위:원) >

구분/ 유형		펀드운영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목적(지침 1조)		직원동기 부여	직원동기 부여	직원동기 부여																																																												
개념		조합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조합 규약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보수 중 직원에게 지급	직원의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지급	회사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시작년도		2021	2005	2019																																																												
지급 대상		지급대상기간 및 지급 예정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의 직원 (공무직 제외)	지급 예정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의 직원 (공무직 제외)	경영평가 대상연도에 재직한 임직원																																																												
		21년 117 명	20년 100 명 → 21년 111 명	20년 125 명 → 21년 135 명																																																												
재원 (2021)	재원	기관 자체수입	기관 자체수입	기관 자체수입																																																												
	예산	1,164,972,648	1,151,962,181	813,365,162																																																												
	결산	1,164,972,648	852,051,584	809,730,246																																																												
지급 시기		2회 분할(10월, 익년 3월)	매년말(12월)	3사 분기(7월)																																																												
지급 기준		차등지급	차등지급	균등지급																																																												
계산식		모태펀드 조합원총회에서 승인 받은 성과보수 중 성과급 지급대상 금액을 지급대상자에게 차등하여 지급하되 모태펀드 운용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대상그룹을 산정하고 성과급 지급 결정연도 이전 3개년 근무평정 및 근무일수를 반영	근무평정시행지침에 정한 평가결과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비율 *임원: 기준연봉의 60% 직원: 기준 월봉의 100%(‘20년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적용범위</th> <th>S</th> <th>A</th> <th>B</th> <th>C</th> <th>D</th> <th>등급 없음</th> </tr> </thead> <tbody> <tr> <td>관리자 이상</td> <td>134%</td> <td>115%</td> <td>100%</td> <td>85%</td> <td>66%</td> <td>66%</td> </tr> <tr> <td>대리 이하</td> <td>120%</td> <td>110%</td> <td>100%</td> <td>90%</td> <td>80%</td> <td>80%</td> </tr> </tbody> </table>	적용범위	S	A	B	C	D	등급 없음	관리자 이상	134%	115%	100%	85%	66%	66%	대리 이하	120%	110%	100%	90%	80%	80%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 등급</th> <th>적용범위</th> <th>S</th> <th>A</th> <th>B</th> <th>C</th> <th>D</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지급율</td> <td>차장 이상</td> <td>300%</td> <td>200%</td> <td>150%</td> <td>100%</td> <td>0%</td> </tr> <tr> <td>과장 이하</td> <td>250%</td> <td>200%</td> <td>150%</td> <td>100%</td> <td>50%</td> </tr> </tbody> </table>	평가 등급	적용범위	S	A	B	C	D	지급율	차장 이상	300%	200%	150%	100%	0%	과장 이하	250%	200%	150%	100%	50%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S</th> <th>A</th> <th>B</th> <th>C</th> <th>D</th> <th>E</th> </tr> </thead> <tbody> <tr> <td>임원</td> <td>60%</td> <td>48%</td> <td>36%</td> <td>24%</td> <td>미지급</td> <td>미지급</td> </tr> <tr> <td>직원</td> <td>100%</td> <td>80%</td> <td>60%</td> <td>40%</td> <td>미지급</td> <td>미지급</td> </tr> </tbody> </table>	대상	S	A	B	C	D	E	임원	60%	48%	36%	24%	미지급	미지급	직원	100%	80%	60%	40%
적용범위	S	A	B	C	D	등급 없음																																																										
관리자 이상	134%	115%	100%	85%	66%	66%																																																										
대리 이하	120%	110%	100%	90%	80%	80%																																																										
평가 등급	적용범위	S	A	B	C	D																																																										
지급율	차장 이상	300%	200%	150%	100%	0%																																																										
	과장 이하	250%	200%	150%	100%	50%																																																										
대상	S	A	B	C	D	E																																																										
임원	60%	48%	36%	24%	미지급	미지급																																																										
직원	100%	80%	60%	40%	미지급	미지급																																																										
등급		5등급(S, A, B, C, D) + 등급없음	5등급(S, A, B, C, D)	6등급(S, A, B, C, D, E)																																																												
등급별 배정인원(비율)		S : 10% 이내 A : 20% 이상 B : 40% C : 20% 이상 D : 10% 이내	S : 10% 이내 A : 20% 이상 B : 40% C : 20% 이상 D : 10% 이내	해당없음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 재구성

한국벤처투자가 임직원에게 2021년 실제 지급 결정한 성과급 종류는 펀드운영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이 있으며 지급 총액은 2,826백만원으로 직원 1인당 평균 21백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팀장 이상 간부급 27명 성과급은 952백만원으로 총직원 134명 대비 20% 인원이 성과급 총액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 [표 21] 2021년 성과급 결정·지급 현황 (단위:원) >

구분/ 유형	인원	펀드운영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금액	
임원	3명	-	-	258,873,120	258,873,120	
책임심사역	본부장/실장	7명	117,495,583	103,576,803	63,686,554	249,510,262
	팀장	16명	247,990,501	149,933,473	92,655,509	416,182,325
	이사대우	1명	14,240,051	9,961,390	9,804,517	29,733,942
선임심사역	차장/과장	40명	331,957,524	246,697,706	172,376,856	651,444,815
심사역	대리/사원	63명	424,486,274	306,049,754	187,861,384	791,051,508
전문계약직	5명	28,749,182	35,832,458	24,472,306	89,053,946	
계		1,164,919,115	852,051,584	809,730,246	2,826,700,945	

한국벤처 투자는 성과급 운영에 있어서 내부 근무평정시행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나 예산운용지침과²³⁾는 상이하게 운용을 하고 있다.

2021년 결정된 성과급을 살펴보면, 펀드운영성과급 경우 중간관리자 S급 경우 기준의 134%이며 차하위 등급 C경우 기준의 85%이며, 대리이하 S급 경우 기준의 120%이며 차하위 등급 C경우 기준의 90%로 책정하였다. 또한 3개년 성과급 등급이 없음에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만들어 지급하였다.

23)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성과급차등 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또한 등급별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내부평가급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엄정한 내부성과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며, 2021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내부평가급의 지급 횟수, 차등 등급 수,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 차등수준은 경영평가 성과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내부평가 성과급 경우 105명에 대해 S급 3명(3%), A급 26명(25%), B급 49명(47%), C급 21명(20%), D급 5명(5%)으로 배분하였다.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해당 성과급 지급을 위한 별도의 등급을 책정하지 않고, 중기부에서 통보되는 기관 평가등급을 활용하여 일괄 배분하고 있다. 그 결과 경영평가성과급 135명에 대해서는 전원 S급(100%)으로 배분하였다.

< [표 22] 2021년 성과급 등급별 현황 (단위:명) >

내부 평가 성과급	평가직군		등급별 인원분포 (명)					합계
			S	A	B	C	D	
	보직자	본부장/실장		2	4	1		
		팀장		4	8	4		
	비 보직자	차장/과장	3	6	15	5	3	
		대리/사원	1	14	22	11	2	

구분	평가등급 활용
펀드운영성과급	지침에 따라 배분된 개인별 근무평정 등급(3개년)
경영평가성과급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의 등급(1개년)

한국벤처투자가 임직원에게 2021년도 실제 지급 결정한 세부 사례 28명을 살펴보면 최대 4천4백만원에서 최소 4백만원까지 성과급을 받고 있다. 한국벤처투자는 성과급 산정시 기준월봉을 연봉의 12분의 1로 산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예산운용지침에서는²⁴⁾ 기준월봉 산정기준이 되는 인건비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한국벤처투자는 포함하고 있다. 또한 펀드운영성과급 경우 모태펀드 운용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대상그룹을 산정하고 성과급 지급 결정연도 이전 3개년 근무평정과 근무일 수를 반영하도록 하였지만,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도 근무일 수를 반영하여 지급하였다.

24) 경영평가성과급·내부평가급 산정기준

< [표 23] 2021년 성과급 세부 지급결정 사례 (단위:백만원) >

구분	펀드운영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평가등급			기준월봉	성과급	평가등급	기준월봉	성과급	평가등급	기준월봉	성과급
	18	19	20								
1	B	A	S	7	13	A	10	20	S	10	10
2	B	C	B	7	11	B	10	15	S	9	9
3	A	D	D	7	9	C	10	10	S	9	9
4	A	A	A	7	11	B	7	11	S	7	7
5	B	C	C	7	11	B	8	12	S	8	8
6	A	S	A	7	14	A	6	12	S	5	5
7	평가없음	C	A	4	5	S	4	12	S	4	4
8	평가없음	평가없음	평가없음	5	2	D	5	-	S	5	1
9	A	A	B	5	8	S	4	12	S	4	4
10	B	B	C	7	11	B	6	9	S	6	6
11	평가없음	평가없음	평가없음	5	2	A	4	9	S	4	1
12	B	B	B	5	8	B	4	7	S	4	4
13	A	C	C	7	10	C	5	5	S	5	5
14	평가없음	C	D	5	5	C	6	6	S	6	6
15	A	S	B	5	8	S	4	12	S	4	4
16	C	D	D	5	7	D	5	2	S	5	5
17	B	C	C	5	7	D	5	2	S	5	5
18	A	B	B	4	7	S	4	10	S	3	3
19	B	B	B	4	7	A	4	8	S	4	4
20	B	C	A	4	7	A	4	8	S	4	4
21	C	B	B	4	7	C	4	4	S	4	4
22	B	A	C	4	7	B	4	6	S	3	3
23	C	D	D	4	5	D	4	2	S	4	4
24	B	C	B	3	5	S	3	9	S	3	3
25	B	C	A	3	5	A	3	7	S	3	3
26	B	B	B	3	5	B	3	5	S	3	3
27	C	C	C	3	6	B	3	5	S	3	3
28	평가없음	평가없음	평가없음	3	2	D	3	1	S	3	1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 재구성

구분	호봉제 적용자	연봉제 적용자	
기준월봉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	① 기본급여	기본급, 본봉, 직무급 ⁵⁾	기본연봉 ¹⁾
	② 통상적 수당	직무수당(직무급) ⁵⁾ , 직책수당, 책임수당, 위험작업수당 등	-
	③ 상여금성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	-
	④ 고정상여금	상여수당, 기본상여금,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기타	⑤ 기타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연월차수당 유급휴가수당 주택수당 중식수당 등	-
	⑥ 기타 복리후생비	자녀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체육행사비 등	-
	⑦ 초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⑧ 성과상여금	경영성과배분금, 포상금, 성과급, 생산장려금 등	성과연봉
법정 부담금	⑨ 4대보험 부담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좌동
	⑩ 퇴직급여 총당금	퇴직급여총당금	좌동

【관계기관 의견】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중기부 공문에 따라 지급하였고, 경영평가결과 통보 시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향후 조치사항(직원의 경우 기준 월봉의 일정 비율)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대비 경영실적평가 성과급 지급 비율이 절반 이상 낮은 점(최대 100%)을 고려하여 배분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기부 타 산하기관을 조사하여 향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께서는

앞으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시 차등지급, 내부평가성과급 지급시 실제 차등비율 등을 검토하시어 성과급 제도가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 업무 개요

한국벤처투자는 「임직원교육훈련지침」(이하 “교육훈련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임직원 교육훈련 실시 후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교육훈련지침 아래 [표 24]에 따르며 교육훈련비 집행기준은 어학 및 개인별 직무교육은 1인당 연 200만원 통합 한도 내 실비지원 하며, 대표이사 승인으로 1인당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표 24] 교육훈련비 집행기준 >

구 분	정 의	교육내용		개정(안)
공통교육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	법정/규정 필수교육 교양강좌		- 회사에서 일괄 시행
		어학		- 연 200만원 통합 한도 실비지원
전문교육	개인별 담당업무 수행에 관련된 국내외 교육과정	외부 전문 교육	개인별 직무교육	* 한도 초과 시 대표이사 승인
			기타 선발교육	- 실비지원 (최대300만원/1인) * 한도 초과 시 대표이사 승인
		사내전문교육		- 회사에서 일괄 시행 (on demand 교육)
위탁교육	국내외 외부 교육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에 2주 이상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 (국내외 대학원 및 대학, 연구소, FoF 운영사 등 전문기관)	경영/경제분야 및 위탁교육 대상자 관련 업무분야		-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함 * 인사위원회에서 파견 여부 승인 * 대상자는 전문교육 비용지원에서 제외되며 연 120만원 한도 내에서 어학교육 지원

또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임직원 본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한국벤처투자 4년간 임직원 577명 중 390명(미신청자 187명)에게 745백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였다. 교육훈련비 지급 세부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5백만원 이상 지급자는 총 31명이고('19년 17명, '20년 8명, '21년 5명, '22년 1명) 최고 25백만원 이상 지급자도 3명('19년 2명, '21년 1명)이었다.

< [표 25] 교육훈련 현황(단위: 천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0월	합계
개인별 외부직무교육	48,861	33,192	54,982	23,213	160,247
교양강좌	3,420	0	0	0	3,420
기타	99	0	540	270	909
기타 선발교육	105,752	73,800	27,100	37,500	244,152
대학원	53,400	0	52,894	11,762	118,056
부서별 직무교육	509	4,850	2,446	7,420	15,225
어학	81,903	55,772	39,238	9,806	186,718
의무교육	1,500	0	7,390	7,470	16,360
합 계	295,444	167,613	184,589	97,441	745,087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ERP 개인별 교육훈련참가신청/결과보고 기준) 재구성

한국벤처투자는 2019년 3분기 노사협의회 교육훈련비 잔여예산 소진방안 논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총 33인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37,193,800원을 추가 지원

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아래 [표 26]과 같다.

< [표 26] 2019년 개인별 교육훈련 추가지원 현황(단위: 천원) >

순번	이름	본부	어학교육	직무교육	합계
1			0	1,170	1,170
2			0	790	790
3			0	1,170	1,170
4			336	0	336
5			1,260	0	1,260
6			0	580	580
7			0	640	640
8			0	600	600
9			0	480	480
10			1,193	540	1,733
11			1,200	600	1,800
12			1,200	700	1,900
13			0	1,170	1,170
14			0	600	600
15			0	610	610
16			1,190	590	1,780
17			1,200	0	1,200
18			1,133	700	1,833
19			1,190	580	1,770
20			720	590	1,310
21			950	700	1,650
22			0	1,170	1,170
23			900	612	1,512
24			1,200	500	1,700
25			1,000	600	1,600
26			0	700	700
27			1,130	600	1,730
28			0	600	600
29			0	200	200
30			600	0	600
31			600	0	600
32			1,200	0	1,200
33			1,200	0	1,200
합 계			19,402	17,792	37,194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 재구성 / 인재개발팀-0000(2019.10)

「임직원교육훈련지침」(이하 “교육훈련지침”이라 한다.) [별표 1] 교육훈련비 집행기준의 1인당 교육비 한도초과 지원의 취지는 임직원들의 교육훈련을 통한 효과적인 직무수행과 임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존재할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통해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벤처투자는 노사협회의 요구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1인당 교육비 지원액을 초과하여 신청자 33인을 대상으로 37,194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2019년 공통교육으로서 어학교육 경우 연120만원까지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19년 당시)하였지만 2019년 26명에 대해 19,737천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 [표 27] 2019년 개인별 어학교육 초과지급 현황(단위: 천원) >

구분	이름	지급금액	초과금액
1		1,250	50
2		1,258	58
3		1,267	67
4		1,288	88
5		1,400	200
6		1,528	328
7		1,600	400
8		1,665	465
9		1,721	521
10		1,772	572
11		1,800	600
12		2,024	824
13		2,078	878
14		2,100	900
15		2,180	980
16		2,246	1,046
17		2,327	1,127
18		2,333	1,133
19		2,344	1,144
20		2,368	1,168
21		2,390	1,190
22		2,398	1,198
23		2,400	1,200
24		2,400	1,200
25		2,400	1,200
26		2,400	1,200
합계		50,937	19,737

또한 지급한도가 없는 대학원 학비 지급현황을 보면 총 10명에게 118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연간 1명에게 최고 28백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교

육훈련지침에 따르면 국내외 대학원등에 외부위탁교육을 받는 경우 전문교육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다음 2건에 대해 62만원이 추가 지급되었다.

< [표 28] 위탁교육 대상자 전문교육비용 추가지급 현황(단위: 천원) >

순번	대상년도	이름	대학원	어학교육	직무교육	합계
1	2021	신OO	5,000	1,200	200	6,400
2	2022	신OO	5,000	1,200	420	6,620
합 계			10,000	2,400	620	13,020

【관계기관 및 관계자 의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1인당 교육훈련비 지원한도, 지원절차 등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위탁교육 대상자 전문교육 비용 추가지급의 경우 대상자가 감사실에 근무함에 따라 1인당 감사 관련 교육 최소 40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심사 시 직원 1인당 감사 관련 교육 참여시간 확인)하여 회사 승인 하에 교육에 참가했다고 하며, 앞으로도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께서는

예산소진을 위한 교육훈련비 집행을 자제하시고 효과적인 직무수행과 임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간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직원 본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_기관주의)

1. 업무 개요

한국벤처투자(이하 “벤처투자”이라 한다.)는 「회계규정」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인건비 편성 및 집행 현황은 아래 [표 29] 와 같다.

< [표 29] 인건비 편성 및 집행 현황 >

인건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편성(백만 원)	9,414	10,495	10,239	14,114	17,531
집행(백만 원)	8,062	9,332	8,515	12,455	-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 재구성

2. 법령 등 관련 근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고 한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지침”이라 한다.) ‘초과근무수당(110-01-5)’ 목의 규정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등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에서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벤처투자는 아래 [표 30] 와 같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41,321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2,977,503,384원)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였

다.25)

< [표 30] 초과근무시간 및 수당지급 내역 >

구분	초과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
2021년	21,050시간	1,547,366,037원
2022년	20,271시간	1,430,137,347원
총 계	41,321시간	2,977,503,384원

주: 2022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치임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 재구성

기재부 「예산지침」 등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위 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벤처투자는 임직원의 실제초과근무 수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월 4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당연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최근 2년간 벤처투자 임직원의 실제초과근무 수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31]의 “직급별 실제초과근무 수행시간”과 같이 대리급 145시간, 과장급 161시간 등 총계 평균 151시간의 초과근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13시간(총계평균 151시간 ÷ 12개월)으로 실제초과근무를 수행한 시간이 매월 당연지급하고 있는 40시간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31] 직급별 실제초과근무 수행시간 >

구분	실제 초과근무시간						
	이사대우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기타
2021년	163	121	161	151	147	196	192
2022년	101	167	156	171	142	100	141
총 계	264	288	317	322	289	296	333

주: 2022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치임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 재구성

25) 벤처투자는 ‘20.7월 신ERP 도입과정 기존 구ERP 데이터가 부정확하게 넘어와 ’21년도 이전 데이터는 산출이 어렵다고 답변

【관계기관 의견】

벤처투자는 「예산지침」 등을 고려하여 규정에 부합하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지침」 등에 부합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 업무 개요

한국벤처투자는 ‘2022년 제5차 이사회’(2022.6.8.(수)) 의결을 거쳐 2022년 8월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지역사무소에는 한국벤처투자 직원 1명(책임심사역 ▶▶▶)이 2022년 8월 8일자로 부임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 중이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한국벤처투자 「정관」 제3조²⁶⁾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국외에 분사무소, 출장소 및 현지법인 등을 둘 수 있고, 한국벤처투자 「이사회규정」 제3조²⁷⁾에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무소, 분사무소 등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 「직제지침」 제5조의2 제1항²⁸⁾에서는 지역사무소를 글로벌성장본부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지침의 [별표] ‘주요조직 및 벤처금융연구센터의 업무분장’에서는 지역사무소 업무 계획 수립, 운영 및 관리 총괄 등을 글로벌성장본부에 분장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조²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예산을 운

-
- 26) 한국벤처투자 「정관」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국외에 분사무소, 출장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27) 한국벤처투자 「이사회규정」 제3조(심의·의결사항) ② 정관 제36조제8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소, 분사무소 등의 설치, 이전, 폐지에 관한 사항
- 28) 한국벤처투자 「직제지침」 제5조의2(지역사무소) ① 규정 제11조에 따라 둔 지역사무소는 글로벌성장본부에 둔다.
- 29)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조(예산 운용의 원칙) 공공기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무건전성 확보
 2. 국민 부담의 최소화
 3.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

용함에 있어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대하여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에게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제4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이나 생활안정자금의 용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한다.

* 매년 1월 1일(1분기), 4월 1일(2분기), 7월 1일(3분기), 10월 1일(4분기) 금리를 각 분기 중 적용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한국벤처투자 ‘2022년 제5차 이사회’(2022.6.8.) 의결 안건 제4호 ‘지역사무소 설치의 건’을 보면 한국벤처투자는 지역사무소 설치 시 인력을 사무소장 1명만 배치하고 필요시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지역사무소 사무실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BIFC 내 공용오피스인 WeWork의 공간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실제 해당 공용오피스 내 8인용 사무공간을 임차하여 부산 지역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다. 해당 임대차 계약체결일은 2022년 7월 21일이고 임대차기간은 2022년 8월 8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이다. 임차보증금은 6,22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월임차료(멤버십비용)는 2,79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오피스셋업비용은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한국벤처투자는 2022년 7월 27일 개정 전 「인사규정」에서는 제19조 제1항³⁰⁾

4. 인건비 등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서의 고객 등의 참여를 제고

5.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30) 한국벤처투자 「인사규정」 제19조(파견) ①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타기관이나 기타 필요한 곳에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에 파견에 대해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직원을 타기관이나 기타 필요한 곳에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사무소와 지방사무소 내용을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22년 7월 27일에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파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는데 「인사규정」 제3조³¹⁾에서는 ‘파견’을 해외사무소, 지방사무소 근무 및 타 기관이나 타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의 파견근무 개념과 달리 직제지침상 한국벤처투자 소속인 해외사무소와 지방사무소를 파견 대상기관에 포함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 인사팀 결재문서(한국벤처투자 인사팀-3987(2022.8.9.)호) ‘지역사무소 파견직원 지원사항 보고의 건’에 따르면 ‘지역사무소 파견직원 지원사항(안)’은 다음과 같다.

< [표 32] 지역사무소 파견자 지원현황(한국벤처투자 안) >

구 분		파견직원(팀장급)	가족동반시(12세이상)*	근거규정
발령일자		7/1(금)	-	-
부임소요일수		최대 3일	(좌동)	여비규정 제18조
부임여비 (최대3일)		일비 = 30,000원 x 3일 식비 = 21,000원 x 3일 숙박비(2박), 교통비 실비 153,000원 + α	본인체재비의 2/3 102,000원 + α	여비규정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국내이전비* (400km 미만)		단신부임 시 320,000원	가족동반 시 640,000원	여비규정 제19조 [별표4]
택 1	체재비	737,800원 (30일기준)	-	여비규정 제14조
	사택 지원금	단신부임 기준, 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1.5억원	가족동반(4인이하), 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1.7억원	사택대여및관리지침 제14조, [별표1]
		사택 대여시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지원	-	사택대여및관리지침 제19조
업무추진비		월 300,000원 내외 (기획조정팀 안내예정)	-	내부품의에 따름 (대표이사 결재)
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분기별 복지포인트로 지급)	-	

31) 한국벤처투자 「인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파견”이라 함은 해외사무소, 지방사무소 근무 및 타 기관이나 타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벤처투자 「여비규정」 제14조 제1항³²⁾에서는 파견자에 대해 사택지원을 받지 않을 시 [별표1-2]³³⁾에 따라 체제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벤처투자는 사택지원금으로 임차보증금 1.5억원 또는 체제비 737,800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차보증금 1.5억원 경우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 주택자금 대출한도인 7천만원 보다 2배 이상 높고, 매월 체제비 737,800원 경우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22. 3분기) 4.16%로 계산시 임차보증금 2.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동 규정 제17조³⁴⁾ 및 제18조³⁵⁾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해서 부임에 소요되는 여행일수에 대해 [별표1-1]³⁶⁾의 여비를 지급하며, 여행일수는 최대 3일로 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21조³⁷⁾에서는 12세 이상의 직원 가족에 대해 직원 본인에 상당하는 체제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가족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벤처투자는 ▶▶▶이 2022년 8월 8일 부산 지역사무소로 부임

32) 한국벤처투자 「여비규정」 제14조(체제비의 지급) ① 직원의 국내여행 체제비는 별표1, 파견시 체제비는 사택지원을 받지 않는 자에 한하여 별표1-2에 의하여 정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33) 파견시 체제비 기준(단위:원)

구분	금액
기준액	(30일 기준) 527,000
팀장	기준액의 140%
팀원	" 125%

34) 한국벤처투자 「여비규정」 제17조(부임여비 및 이전비의 지급대상) 부임여비 및 이전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35) 한국벤처투자 「여비규정」 제18조(부임여비의 지급) ① 부임여비는 구임지에서 신임지까지의 여행 소요일수에 대하여 별표1의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부임에 소요되는 여행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가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6) 운임 및 체제비 기준(단위:원) >

직급	운임				체제비		
	항공	철도	선박	자동차	일비	식비	숙박료
임원	실비	실비	실비	왕복거리	40,000	45,000	실비
팀장	"	"	"	1km에 대하여	30,000	21,000	"
팀원	"	"	"	190원 적용	20,000	21,000	"

37) 한국벤처투자 「여비규정」 제21조(가족여비의 지급) 가족여비는 부임명령을 받은 당시의 가족 1인 마다 이전할 때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1. 12세 이상의 자에게는 그 이전할 때의 본인에 상당하는 운임의 전액과 체제비의 3분의 2에 상당한 액

이후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을 파견자로 보고 파견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재비를 지급하고 있다. 8월~10월까지 지급된 해당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체재비 총 3,485,998원이다. 또한 한국벤처투자는 ▶▶▶ 가족에 대한 체재비를 지급하면서 가족 거주지 이전여부와 관련된 증빙을 확인하지 않았다(감사기간 중 확인).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체재비 지급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33] 체재비 지원내역(단위:원) >

지급대상 기간	금액(원)		
	윤OO	가족(배우자)	합계
8.8. ~ 8.31	616,000	410,666	1,026,666
9.1. ~ 9.30.	737,800	491,866	1,229,666
10.1. ~ 10.31.	737,800	491,866	1,229,666
합계	2,091,600	1,394,398	3,485,998

책임심사역 ▶▶▶은 2022년 8월 8일 부산 지역사무소 발령과 관련하여 한국벤처투자로부터 본인 및 가족(처)에 대해 서울-부산간 근무지 이전에 따른 부임여비(국내이전비 제외)를 326,269원 지급받았다. 부임소요에 1일이 걸렸음에도 부임소요여행일수 3일(2022년 8월 5일 ~ 7일)에 대해 지급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34] 부산 부임여비 지원내역(단위:원) >

구분	일비	식비	교통비	가족(처) 부임여비	합계
금액(원)	90,000 (30,000*3일)	63,000 (21,000*3일)	71,269	102,000 (본인부임여비 2/3)	326,269

반면 2022년 7월 1일자로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전문가 발령을 받은 다른 직원의 경우 서울-세종간 근무지 이전에 따른 부임소요여행일수를 1일로 하여 부임여비(국내이전비 제외)를 41,000원 지급받았다.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35] 세종 부임여비 지원내역(단위:원) >

구분	일비	식비	교통비	가족 부임여비	합계
금액(원)	20,000 (20,000*1일)	21,000 (21,000*1일)	-	-	41,000

【관계기관 및 관계자 의견】

이사회 결의에 따른 지역사무소 신규 개소에 따라 '22년 7월 인사규정 개정 시 과건 용어정의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는 용어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함이고 격지 근무직원에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며 지역에 회사명의를 관사·합숙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직원 격지 발령 시 최소한의 근무여건 제공이 어렵다고 하였고, 앞으로도 한국벤처투자는 임직원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제공하되, 사회통념상 과도한 지원이 없도록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께서는

지방사무소 발령에 대해 공무원 규정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여비규정」의 취지와 다르게 지급되는 여비 지급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1. 업무 개요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파견 업무처리 및 해외사무소 운영지침」, 「해외근무직원 복지후생 운영지침」, 「해외근무직원 보수·복지규정」에 따라 해외사무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해외사무소 3곳(미국사무소, 중국사무소, 싱가포르사무소)을 운영 중이며 파견인력 4명과 현지 인력 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예산은 20억 내외이며 예산 대비 집행실적은 2019년 74%, 2020년 53%, 2021년 63%이다.

2022년 9월말 기준 운영현황, 직원 근무 현황, 예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36]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

구분	소재지	설치연도	인력 현황		
			파견인력	현지인력	합계
미국사무소	샌프란시스코	2013.8월	2명	2명	4명
중국사무소	상해	2014.6월	1명	2명	3명
싱가포르사무소	싱가폴	2015.8월	1명	1명	2명

< [표 37] 해외사무소 직원 근무현황 >

직원명	직급	국가	근무기간	담당업무
	선임심사역	싱가폴	2015.8.17.~2019.2.17.	사무소 업무총괄
	선임심사역	미국	2016.3.24.~2021.2.28.	해외VC펀드 출자사업 지원 등
	책임심사역	중국	2017.8.14.~2020.2.23.	사무소 업무총괄
	책임심사역	미국	2018.7.3.~2021.8.31.	사무소 업무총괄
	선임심사역	싱가폴	2019.2.7.~현재	사무소 업무총괄
	선임심사역	미국	2021.6.25.~현재	해외VC펀드 출자사업 지원 등
	선임심사역	미국	2021.9.1.~현재	사무소 업무총괄
	선임심사역	중국	2022.1.25.~현재	사무소 업무총괄

< [표 38] 해외사무소 예산현황(단위: 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11.28. 기준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미국	922,250,400	692,511,600	860,954,400	646,504,344	794,554,200	528,162,206	920,351,000	668,511,421
중국	563,505,449	416,352,647	559,543,004	298,014,742	646,321,400	300,965,751	647,445,500	473,968,373
싱가폴	487,635,552	358,607,791	775,723,796	214,823,523	461,334,250	377,936,512	534,927,000	367,319,782
합계	1,973,391,401	1,467,472,088	2,196,221,200	1,159,342,609	1,902,209,850	1,207,064,469	2,102,723,500	1,509,799,576

2. 법령 등 관련 근거

한국벤처투자는 「해외근무직원 보수·복지규정」 제4조³⁸⁾에 따라 동 규정 [별표1]을 기준으로 해외근무직원에게 해외근무에 따른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기준 [별표1] ‘해외 근무에 따른 부가급여’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39] 해외 근무에 따른 부가급여 >

국가 \ 직급	임원	책임 심사역	선임 심사역	심사역
미 국(US\$)	4,041	2,935	2,702	2,470
일 본(¥)	549,852	392,694	358,150	326,821
독 일(EUR)	3,798	2,717	2,479	2,264
중 국(RMB)	27,121	19,640	17,988	16,338
브라질(US\$)	4,430	3,280	3,019	2,757
싱가포르(싱가포르\$)	5,946	4,249	3,891	3,535

한국벤처투자는 「해외근무직원 보수·복지규정」 제5조³⁹⁾에 사택제공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한도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직원 복지후생 운영지

38) 한국벤처투자 「해외근무직원 보수·복지규정」 제4조(해외근무에 따른 부가급여) 해외근무직원에게는 해외근무기간 중 근무지의 물가 및 생활수준 등을 참작하여 지역별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해외근무에 따른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39) 한국벤처투자 「해외근무직원 보수·복지규정」 제5조(사택제공) ① 해외근무직원에 대하여는 회사가 임차한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 현지 사정에 의거하여 회사명의로 임차계약이 곤란할 경우 해외근무직원 명의로 계약을 하고, 회사는 임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지원하되, 그 한도는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지침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한 사택과 관련되어 현지에서 중개수수료 등 사택 임차와 관련되어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한도내에서 회사가 부담한다.

침」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지역별 한도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40] 해외 근무 월임차료 기준 >

구분	월임차료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미국사무소(USD)	4,400 이내	4,400 이내
중국사무소(CNY)	25,626 이내	25,626 이내
싱가포르사무소(SGD)	6,487 이내	6,487 이내

주) 센터장은 월임차료 한도액에서 10%를 가산한다.

한국벤처투자는 「해외근무직원 보수·복지규정」 제5조의140)에서 해외근무 직원의 부양가족 동반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 「여비규정」 제24조의141)에 따라 한국벤처투자는 해외사무소에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해 신임지까지 여행소요일수에 대한 여비 및 이전비를 지급한다. 또한 동 규정 제25조의142)에서 부임에 따른 가족여비도 규정하고 있다. 부임여비 지급기준인 [별표5] ‘운임 및 체재비’는 아래 표와 같고 부임에 따른 여행소요일수 기준인 [별표5-1] ‘부임소요 여행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 40) 한국벤처투자 「해외근무직원 보수·복지규정」 제5조의 1(가족수당) ①해외근무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가족수당월액은 배우자수당 월액과 자녀수당월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③배우자수당 월액은 별표1의 해외근무에 따른 부가급여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자녀수당은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해외근무직원에게 지급하며, 1인당 월액은 US\$60로 한다.
 ⑤제4항에 의한 자녀수당지급에 있어서 자녀의 수는 3인을 한도로 하되, 자녀의 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령순으로 한다.
 ⑥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 출국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 중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41) 한국벤처투자 「여비규정」 제24조의 1(부임여비, 이전비의 지급) ①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게 구임지에서 신임지까지의 여행소요일수에 대한 별표5의 여비와 다음 각호의 이전비를 지급한다.
 1. 부임할 때에 가족을 동반하는 자에게는 국제규격 20피트 컨테이너(화물용량 25m² 기준) 1대분 이내의 이전 실비
 2. 부임할 때에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제규격 20피트 컨테이너 (화물용량 25m² 기준) 1/2대분 이내의 이전 실비
 3. 부임할 때에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로서 부임후 가족을 불러가는 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범위 내에서 본인부임시 기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이전 실비
 ② 제1항의 규정중 부임여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부임소요여행일수는 별표5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42) 한국벤처투자 「여비규정」 제25조의 1(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국외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 또는 국외에서 본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부임할 때에 가족을 동반하거나 부임 후에 가족을 불러갈 때에는 가족 1인마다 그 이전할 때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1. 부모·처 및 12세이상인 자녀에 대하여는 본인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전액과 체재비의 3분의 2에 상당한 액.
 2. 12세미만의 자녀에 대하여는 본인과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실비전액과 본인이 이전할 때의 체재비의 3분의 1에 상당한 액

< [표 41] 해외 부임여비 지급기준(단위: US \$) >

구 분	교통비				등 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				
대표이사	Business Class	실비	실비	실비	가 나 다 라	50	389 289 185 149	160 117 87 73
이사감사	Business Class	"	"	"	가 나 다 라	40	282 207 139 100	133 99 72 61
책임심사역	Economy Class	"	"	"	가 나 다 라	35	223 160 112 79	107 78 58 49
선임심사역 사역	Economy Class	"	"	"	가 나 다 라	30	176 137 91 75	81 59 44 37

※ 미국사무소 가등급 / 싱가포르사무소 가등급 / 중국사무소 다등급

< [표 42] 해외 부임소요 여행일수(단위: 일) >

일 수 \ 지역	남미 및 아프리카	구주·북미 및 그외 지역	일본·중국 및 동남아시아
소 요 일 수	5	4	3

반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1항⁴³⁾에서는 재외공무원에 대한 주택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수당 지급 기준인 동 규정 [별표6의2]는 아래와 같으며 한국벤처투자 해외사무소 소재지의 2022년 외교부령 재외공무원 주택수당 상한선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43] 재외공무원 주택수당 지급근거 >

적용 범위	월 지급액	비 고
1. 군 인	80,000원	
2. 재외공무원	공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1. 재외공관으로 부임할 때에는 2개월분의 주택수당을 따로 지급한다. 2.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주택수당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주택수당)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소위·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표 44] 재외공무원 주택수당 상한선 >

	4급 5년 이상	4급 5년 미만
미국	USD 4,400	USD 4,200
중국	CHY 25,626	CHY 24,126
싱가폴	SGD 6,487	SGD 6,237

자료 : 한국벤처투자 '해외파견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타기관 규정비교' 보고서(2022.2.4.)

또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외근무직원보수·복지규정」 제5조44)에서는 사택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근무직원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유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임차한 사택에 대해서만 해외근무직원에게 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해외근무직원 지원기준 부적정(사택계약 및 지원기준)

감사기간인 2019년~2021년 3년간 해외근무직원에게 지급된 부가급여, 임대료, 가족수당, 보험료 비용은 1,107,911,929원(기본급여, 성과급 제외)이며 1인당 1년간 평균 79백만원의 비용이 지급되었고 최대 146백만원을 지급하였다.

4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근무직원보수·복지규정」 제5조(사택대여) 해외근무직원에 대하여는 중진공 소유의 사택 또는 중진공이 임차한 사택을 대여한다.

< [표 45] 해외직원 부가수당 등 현황(단위: 원) >

구분	부가급여	임대료	가족수당	보험료	합계
1	3,534,241	4,161,089	1,051,444	0	8,746,774
2	26,876,922	51,443,180	7,302,784	6,277,167	91,900,053
3	39,488,484	56,103,436	11,537,526	8,577,272	115,706,718
4	40,594,136	54,809,090	11,826,100	9,450,510	116,679,836
5	25,558,295	58,734,018	8,097,246	32,910,250	125,299,809
6	40,477,008	59,485,398	11,848,443	34,676,235	146,487,084
7	26,937,779	37,835,826	7,835,815	20,686,963	93,296,383
8	24,647,531	58,734,018	6,161,878	14,172,051	103,715,478
9	37,388,978	59,485,398	9,347,239	15,320,181	121,541,796
10	6,051,155	9,278,682	1,512,788	1,187,144	18,029,769
11	12,115,063	18,888,175	-	-	31,003,238
12	19,974,520	29,932,326	-	-	49,906,846
13	26,027,909	42,482,160	8,072,342	-	76,582,411
14	4,482,213	3,864,230	669,291	-	9,015,734
합계	334,154,234	545,237,026	85,262,896	143,257,773	1,107,911,929

외교부 주택수당 지급 기준이 직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벤처투자 「해외 근무직원 복지후생 운영지침」(2022.02.08. 개정)은 직급에 따른 구분 없이 외교부 주택수당 지급기준의 4급 5년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미국 기준 \$4,400)을 사택지원 금액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벤처투자는 명확한 근거 없이 센터장에 대하여는 10%를 가산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규로 개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4명 중 3명이 센터장임을 감안할 때 한국벤처투자의 실질적 사택비용 지원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직급·직책을 구분한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표 46] 해외직원 임차료 지원기준 >

구분	월임차료	10% 가산시 한도
미국사무소(USD)	4,400 이내	4,840 이내
중국사무소(CNY)	25,626 이내	28,188.6 이내
싱가폴사무소(SGD)	6,487 이내	7,135.7 이내

또한 한국벤처투자는 「해외근무직원 보수·복지규정」에서 해외근무직원에 대해서 회사가 임차한 사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외사무소 중 회사가 임차한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중국사무소 1개에 불과하다. 또한 임차한 사택에 대한 임차료를 한국벤처투자가 임대주에게 직

접 지불하지 않고 한국벤처투자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직원이 임대주에게 지불하고 있다. 해외직원 주택 임차를 개인명의로 계약 시 계약당사자로서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직원이 위험을 감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직원이 임대주에게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 회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2022년 9월 기준 사택 관련 계약 및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47] 해외직원 사택계약 및 지원 현황 >

국가	직원명	직급	임차명의	계약기간	월임차료	9월 임차료 지원금액
싱가폴		선임심사역		2021.2.1. ~ 2023.1.31.	5,900 싱가포르\$	5,900 싱가포르\$ (5,808,314원)
미국		선임심사역		2022.9.23. ~ 2023.10.22.	5,268 US\$	4,840 US\$ (6,735,296원)
미국		선임심사역		2022.8.1. ~ 2023.7.31.	4,257.17 US\$	4,257.17 US\$ (5,924,235원)
중국		선임심사역	한국벤처투자 중국사무소	2022.3.12. ~ 2024.3.11.	27,000 CNY	27,000 CNY (5,351,130원)

나. 해외근무직원 부임시 여비 등 지급 부적정

선임심사역 ●●●는 2019년 2월 7일자로 싱가포르 해외사무소 소장으로 발령을 받아 2019년 2월 3일 출국을 했고, 이와 관련하여 부임여비를 동반가족까지 총 2,009 US\$(항공운임 제외, 2,291,405원) 지급 받았다. 부임여비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 [표 48] 해외직원 부임여비 산출내역(단위 : US\$) >

구분		여행기간	일비	식비	숙박비	총계
직원	●●●	3일	90 (30*3)	243 (81*3)	528 (176*3)	861 (982,030.77원)
가족	배우자	3일	60 (90*2/3)	162 (243*2/3)	352 (528*2/3)	574 (654,687.18원)
	자녀 (12세↓)	3일	30 (90*1/3)	81 (243*1/3)	176 (528*1/3)	287 (327,343.59원)
	자녀 (12세↓)	3일	30 (90*1/3)	81 (243*1/3)	176 (528*1/3)	287 (327,343.59원)

●●●는 해외사무소 발령에 따라 사택 구하면서 임대인이 초일 기준 임대차 계약을 요청함에 따라 임대기간을 2019.2.1.~2021.1.31.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월임차료 5,500 싱가포르 \$)을 체결하였다. 2019.2.1.~2019.2.6. 기간에 대한 임차료는 ●●●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데 한국벤처투자는 ●●●의 부임일 이전인 2019.2.1.~2019.2.6. 기간에 대한 사택비 970,500원(2월 지급사택비 총4,529,000원을 일할계산)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2019.2.1.~2019.2.6. 기간중 3일에 대해서는 직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해 부임여비를 지급하였는데 통상 여행기간 3일은 2박 3일의 개념으로 보아 숙박비는 2박에 대해 지급하여야 함에도 3박으로 계산하여 숙박비 468,394원을 과다 지급했다.

선임심사역 王某某은 2022년 1월 25일자로 중국 해외사무소 소장으로 발령을 받아 2022년 1월 24일 출국했고, 중국 도착 이후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21일간(2022.1.25.~2022.2.14.) 격리하였다. 이후 王某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2명)은 2022년 3월 7일 출국했고, 중국 도착 이후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16일간(2022.3.7.~ 2022.3.22.) 격리하였다.

「여비규정」상 중국지역 부임에 따른 여행소요일수 기준은 3일인데, 한국벤처투자는 이를 초과하여 해당 격리기간을 포함해 직원 본인(기간: 2022.1.24.~2022.2.14.) 및 가족(기간: 2022.3.7.~2022.3.22.)에 대해 부임여비를 지급하였다. 부임여비(항공료 제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 [표 49] 해외직원 격리시 여비 산출내역(단위 : US\$) >

구분	여행기간	일비	식비	숙박비	총계	
직원	王某某	22일	660 (30*22)	968 (44*22)	1,911 (91*21)	3,539 (4,242,530원)
가족	배우자	16일	320 (20*16)	469.33 (29.33*16)	910 (60.66*15)	1699.33 (2,074,610원)
	자녀 (12세↑)	16일	320 (20*16)	469.33 (29.33*16)	910 (60.66*15)	1699.33 (2,074,610원)
	자녀 (12세↓)	16일	160 (10*16)	234.66 (14.66*16)	455 (30.33*15)	849.66 (1,037,305원)

한국벤처투자 「여비규정」에 따를 때 한국벤처투자는 신임지까지 여행소요 일수에 대한 여비 및 이전비를 지급한다. **OOO**의 부임일자는 2022년 1월 25일 이므로 **OOO** 부임여비는 출국일 1월 24일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하며 그 금액은 165USD(197,726원)이다. 한국벤처투자는 **OOO**의 부임에 따라 사택비를 지급할 수 있었다. 이는 부임일을 기준으로 할 때 부임여비 지급일 중 21일간(2022.1.25.~2.14.)이다. 한국벤처투자 사택비 지원기준으로 보면 중국지역의 21일간 사택지원비는 19,732위안(3,725,603원)이다. **OOO**의 부임일 이후 격리기간에 대해 구임지에서 신임지까지의 여행소요일수에 따른 부임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택지원비 규정을 준용하여 격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며 이에 따른 차액을 계산하면 319,201원이다.(21일간(2022.1.25.~2.14.) 부임여비(4,044,804원) - 사택지원비(3,725,603원))

OOO의 가족에 대해서 한국벤처투자는 2022년 3월 7일부터 부가급여 기준에 따른 가족수당 544,741원(3월 지급 가족수당 일할계산)을 부임여비와 함께 지급하였다. 호텔 격리를 필수로 하는 중국 상황을 감안할 때 가족에 대한 부임여비 지급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같은 기간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급에 해당한다.

한국벤처투자는 **OOO**의 중국사무소 부임에 따라 **OOO** 및 가족에 대해 863,942원을 과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외근무직원 중 특별휴가(배우자출산휴가)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7일간 일시 귀국한 사례가 있는데 한국벤처투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 해외근무기간 중 근무지의 물가 및 생활수준 등을 참작하여 지급하는 해외근무수당인 부가급여 2,884,379원(2021년 10월(3,251,829원) 및 11월(3,244,696원) 부가급여지급액을 일할 계산)을 해외근무직원 보수·복지규정 제9조(보수계산)에 따라 지급하였다.

다. 해외사무소(중국사무소 직원 발령 등) 운영 미흡

한국벤처투자는 해외과건업무처리 및 운영지침에 따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보고사항인 분기사업실적 및 집행예산 실적, 회계현황, 전도금 정산 경우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보고하도록 되었다.

이번 감사기간 중 분기별 보고실적을 점검한 결과 중국 4회, 싱가포르 9회 등 총 13회 기간을 도과하여 실적을 보고하였다.

< [표 50] 해외사무소 분기별 실적보고 현황 >

구분	미국		중국		싱가폴	
	기한 내	기한 외	기한 내	기한 외	기한 내	기한 외
총 48회	16회	-	12회	4회	7회	9회

또한 한국벤처투자는 「정보보안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르면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미국사무소, 중국사무소, 중국사무소 직원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해외 과건 업무처리 및 해외사무소 운영지침」 제41조 1에 따르면 현지고용원에 대해 일부 업무를 위임할 수 있음에도 케이빅 등 시스템 접근이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어 보안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 중국사무소 발령현황을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1111 소장 국내 복귀 발령(2020.2.23.) 이후 1111 소장 발령까지(2022.1.25.) 1년 11개월간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었다. 동 기간 동안 중국사무소는 2명의 현지인만 고용되어 운영되었다.

☞ 소장 경우 기존 3년간 발령기간(2017.8~2020.8.까지)이었으며, 조기귀국(‘20.2.23) 발령 이전에 차기 사무소장을 선발(‘19.12.27)하였지만 현지 미부임으로 재선발 공고(‘21.3.2) 후 ‘21.4월 인사위원회 개최하였으나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지원자가 없어 중국사무소 발령 후보자 미선발 상태로 유지되었다.

< [표 51] 중국사무소 발령현황 >

직원명	직급	파견국가	파견기간	파견사유	담당업무
	책임심사역	중국	2017.08.14. ~ 2020.02.23	인사발령	사무소 업무총괄
	선임심사역	중국	2022.01.25 ~ 현재	인사발령	사무소 업무총괄

< [표 52] 중국사무소 현지 고용인 현황 >

직원명	직위	근무지	근무기간	채용형태
	과장급	중국	2014.06.23. ~ 2019.06.22.	파견직
			2019.08.13. ~ 현재	
			2020.09.21. ~ 현재	
	서무 (대리/사원급)		2015.06.23. ~ 2018.09.21.	
			2018.10.10. ~ 2019.03.22.	
			2019.04.01. ~ 2021.03.31.	

☞ 소장은 국내복귀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중국에서 사택에 거주 중이었고 해당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2019.7.22.부터 2020.7.21.까지였다. 해당 사택 임대차 계약은 임대 기간 내 계약 내용 외의 상황에 임차인이 임의로 임대를 끝내면 임차보증금(40,000위안)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있었고, 한국벤처투자는 위약금 6,819,200원(40,000위안*170.48원))을 회계상 잡손실로 처리하였다. 즉 개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하였지만 손실 비용은 한국벤처투자가 부담하였다.

감사대상기간 2019~2022년 중국사무소 실적을 살펴보면 소장 공석 2년간 동안 네트워킹 실적, 해외투자유치 연계기업수 리서치성과물 등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감사대상기간 한국벤처투자가 투자한 해외VC 글로벌 펀드 국내기업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경우 2개 운용사가 7개 기업에 681억원을 투자하였다.

< [표 53] 중국사무소 실적 현황(2019~2022.10) >

실적명		네트워크 확대 노력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10월말 기준)
실적	해외VC 네트워킹 횟수	43	27	38	33
	유관기관 네트워킹 횟수	11	10	23	16
	해외VC 출자 실무이행 횟수	1	0	3	2

실적명		해외 투자유치 확산 노력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10월말 기준)
실적	해외 투자유치 연계 기업 수	22	49	28	31
	연계 기업 중 투자유치 성공 기업 수	0	0	0	0

실적명		리서치 성과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10월말 기준)
실적	리서치성과물 창출 건수	14	35	20	13

< [표 54] 해외 VC 글로벌 펀드 국내기업 투자 현황(2019.~2022.10.) >

지역	운용사	투자년도	투자기업수	투자금액(억원)
중국	2	2019~2022	6	681
		2019	2	189.65
		2020	2	244.78
		2021	1	84.00
		2022	1	162.57
동남아	9	2019~2022	40	1,020.36
미국	19	2019~2022	262	1,978.59
기타	3	2019~2022	7	31.68
합계	33	2019~2022	315	3711.64

【관계기관 의견】

한국벤처투자는 현재 해외근무직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재외공무원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하고 있고 직책·직급에 따른 지원기준은 향후 마련하겠다고 하였고,

앞으로 해외근무직원 사택 계약 체결 시 회사명의로 계약 체결을 우선 시 하되, 현지 사정에 따라 회사명의 계약이 어려운 경우 임차료 지급내역 등을 확인하여 관련 사항을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에 대한 부임일 전 사택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지 임대인과 계약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 승인에 따라 지급된 건이라는 입장이며, ㉠ 및 가족 격리에 따른 부임여비 지급은 중국정부의 엄격한 격리기준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국사무소 직원 공석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사무소 업무에 차질이 없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직원 보안교육 실시하고 분기별 보고 일정 등을 준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해외사무소 경비 운영은 투명한 집행절차와 회계가 중요함에 따라 임차료 관련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통보)

여비규정 등과 다르게 지급된 ●●● 1,438,894원, ㉠ 863,942원 등을 회수처리하시고 수당 지급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시정)

해외사무소 설립 취지에 맞게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보안, 실적, 사후 보고 등에 대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1. 업무 개요

한국벤처투자(이하 “벤처투자”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벤처투자 「경영공시 관리지침」에 따라 “임원현황” 등을 정부(기획재정부)에 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임원 현황,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벤처투자 「경영공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르면 벤처투자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항목을 매년, 반기별, 또는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라 한다.)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관리지침」 제11조 제1항 제1호 등에서는 공시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경우를 “불성실 공시”라고 명시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불성실공시기관”에 대하여 아래 [표 55]와 같이 벌점을 부여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표 55] 불성실 공시에 대한 벌점부과 명세 >

벌점	사후조치 내용
연간 20점을 초과	기관주의
연간 40점을 초과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관련자 인사조치 등)
2년 연속 ‘기관주의’ 이상에 해당되는 연간 벌점 20점 초과한 기관 중 전년대비 벌점이 증가한 경우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 재구성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벤처투자는 「관리지침」 등에 따라 “임원현황”, “임원 국외출장 내역”, “기관운영 관련 연구보고서” 등 총 41개 항목의 정보를 갱신주기⁴⁵⁾에 따라 알리오⁴⁶⁾에 공시하고 있다.

벤처투자는 공공기관으로써 경영정보공시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공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벤처투자는 아래 [표 56]의 “경영정보공시 지연 및 누락 현황”과 같이 “임원현황”의 경우 2020년도에 5일을, “임원 국외출장내역”의 경우 2019년도와 2022년도에 각각 6개월 및 1개월을,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2019년도에 34개월을 지연하여 공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연구보고서”의 경우에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공시 자체를 누락하는 등 경영공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56] 경영정보공시 지연 및 누락 현황 >

항목	갱신주기	공시지연 및 누락 내용
임원현황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20년) 5일 지연공시
임원 국외출장내역		■ ('19년) 6개월 지연공시, (22년) 1개월 지연공시
노동조합 관련 현황		■ ('21년) 1일 초과공시
이사회회의록		■ ('19년) 21건 중 1건 34개월 지연공시
기관운영 관련 연구보고서		■ ('18년) 미공시, (19년) 미공시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 재구성

이처럼 벤처투자가 경영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 공시기관으로의 지정 등이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45) 수시공시(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정기공시(분기, 반기, 매년)

46) 알리오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alio.go.kr>

【관계기관 의견】

벤처투자는 앞으로 경영공시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앞으로 경영공시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1. 업무 개요

한국벤처투자(이하 “벤처투자”라 한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벤처투자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신고에 대한 복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벤처투자 「임직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회의 등에서 강의·강연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⁴⁷⁾ 이내에 요청인·요청사유·장소 및 사례금 등을 포함한 “외부강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벤처투자 임직원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 총 213개 기관에서 741회(67명)에 걸쳐 외부강의 등을 하고 사례금으로 약 24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벤처투자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요청사유·장소 및 대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47) 청탁금지법 개정('19.11.26.) 전의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

누락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벤처금융연구센터 ■■■ 연구위원 등 4명은 위 기간 동안 총 42회에 걸쳐 외부강의 등을 하고서도 아래 [표 57]의 “외부강의 등 지연신고 현황”과 같이 11회에 걸쳐 그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최장 84일까지 지연하여 신고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57] 외부강의 등 지연신고 현황 >

(단위: 원)

소속	이름	연도	기관명	활동내용	외부강의 종료일	외부강의 신고		사례금
						신고일	지연일수	
		2019		자문	19.02.22	19.02.27	5	200,000
		2019		심사	19.03.21	19.03.27	6	200,000
		2019		평가	19.10.10	미신고 48)	-	200,000
		2021		강의	21.03.26	21.04.28	33	600,000
		2021		강의	21.09.03	21.11.26	84	600,000
		2021		강의	21.11.05	21.11.26	21	600,000
		2021		강의	21.10.26	21.11.26	31	350,000
		2022		회의	22.04.20	22.06.22	63	300,000
		2022		회의	22.04.21	22.06.22	62	300,000
		2022		회의	22.04.22	22.06.22	61	300,000
		2022		회의	22.05.03	22.06.22	50	300,000

주: 청탁금지법 개정('19.11.26) 전의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를 기준으로 지연일수를 산출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 재구성

48) 벤처투자는 “동 건의 경우 준법서비스팀에서 자체 적발('20.08.06)하여 인사팀에 통보하였고, 인사팀은 관련자에 대해 '경고처분'('20.9.1.)하였다”고 답변

【관계기관 의견】

벤처투자는 앞으로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앞으로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후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외부강의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위원 (주의)49)

49) A, B, C의 경우 '19.10.8, '22.1.6. 및 '22.9.22 각각 퇴사하여 처분에서 제외함.

1. 업무 개요

한국벤처투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직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취업규칙」, 「연구용역 관리지침」 등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는 「복무규정」을 통해 직원들의 복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3/4분기 알리오 공시 등을 기준으로 할 때 159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직제규정」에서 직렬을 일반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별정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직제규정」에 따른 정의 및 현원은 [표 58]과 같다. 또한 한국벤처투자는 「취업규칙」 제15조에 따라 '회사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운영 중이며 정책연구용역은 「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라서 추진한다.

< [표 58] 한국벤처투자 직렬별 정의 및 현원 >

구분	정의	현원(명)
일반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직급은 책임심사역, 선임심사역, 심사역으로 구분	139
일반무기계약직	계약직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
공무직	시설, 보안, 미화, 비서, 운전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된 직원	16
일반계약직	회사의 일반 업무수행에 따른 임시적 필요로 기한부로 채용하는 직원	-
전문계약직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능, 경험을 요하는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한부로 채용하는 직원	4 (변호사 1, 노무사 1, 박사 2)
별정직	별정직 직원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	-

2. 법령 등 관련 근거

한국벤처투자 「복무규정」 제2조⁵⁰⁾는 규정의 적용범위를 임원을 제외한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 복무규정 적용범위에 임원을 포함하거나 임원에 대해 별도 복무규정을 마련하여 임원 복무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다. 또한 한국벤처투자는 일반직 직원의 인사 등과 관련해서는 「인사규정」 등을 근거로 관리하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직관리지침」을 근거로 관리하고 있다.

< [표 59]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복무규정 현황 >

구분	기관
복무규정 적용범위에 임원 포함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기술보증기금, ③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④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⑤창업진흥원용, ⑥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⑦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임원 복무규정 별도 제정	①중소기업유통센터, ②공영홈쇼핑
임원 관련 복무규정 미제정	①한국벤처투자, ②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지침) 제2조 및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 및 제20조에 따른 연가의 저축 및 경조사 휴가 등의 특별휴가⁵¹⁾ 외에 다른 휴가제도를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10.8.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반안」을 의결하고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연구용역 관리규정 정비 등을 권고하였다. 권고안에서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은 [표 59]와 같다.

50) 한국벤처투자 「복무규정」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1) 경조사 휴가, 재해구호 휴가, 출산 및 유산 휴가, 난임 치료 시술 휴가, 포상 휴가, 자녀 돌봄 휴가 등

< [표 60] 정책연구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구분	세부 포함내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비율 이상의 외부전문가 심의 참여 -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마련 ○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및 절차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대상)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금액기준 설정, 수의계약 심의의무화등 - (과제선정) 중복연구 등의 배제를 위한 연구과제 사전검증 - (연구자선정) 경영평가위원 및 퇴직임직원 용역수주 제한기준마련, 특정 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의계약 제한장치 강구
연구비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자는 발주기관에 연구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 ○ 연구비 과다·과소지출에 따른 정산절차 마련
결과 평가 및 활용·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평가에 따른 향후 연구참여 우대·제한 등 후속조치 연계 ○ 연구결과 활용상황 점검·평가 ○ 연구결과 공개기준 명시 ○ 경영공시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한 연구결과 병행 공개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한국벤처투자 「복무규정」은 적용대상을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임원의 복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벤처투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박사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이들과 관련된 규정은 제정하지 않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전문계약직은 한국벤처투자의 기관운영 및 사업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직렬로 전문계약직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

한국벤처투자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는데 위 지침과 다르게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는 「연구용역 관리지침」에는 권익위 권고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 권익위 권고사항 반영현황은 [표 61]과 같다.

< [표 61] 한국벤처투자 연구지침 권익위 권고사항 반영 현황 >

구분	권익위 권고 사항	한국벤처투자 지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미포함 포함
	- 일정 비율 이상의 외부전문가 심의 참여 -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마련	
	○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및 절차 정비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 (심의대상)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금액기준 설정, 수의계약 심의의무화등	
	- (과제선정) 중복연구 등의 배제를 위한 연구과제 사전검증	
	- (연구자선정) 경영평가위원 및 퇴직임직원 용역수주 제한 기준마련, 특정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의계약 제한장치 강구	
연구비 정산	○ 연구수행자는 발주기관에 연구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	미포함
	○ 연구비 과다·과소지출에 따른 정산절차 마련	미포함
결과 평가 및 활용·공개	○ 결과평가에 따른 향후 연구참여 우대·제한 등 후속조치 연계	미포함
	○ 연구결과 활용상황 점검·평가	미포함
	○ 연구결과 공개기준 명시	미포함
	○ 경영공시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한 연구결과 병행 공개	포함

【관계기관 의견】

한국벤처투자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께서는

임원 복무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전문계약직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시기 바라며,

회사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도록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연구용역 관리지침」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연구 용역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 업무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한국벤처투자 종합감사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처분을 요구하였다.

- ① 한국벤처투자 공용 차량의 특별한 사유없는 공휴일 사용 및 차량운행 내역 미기록 등을 적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차량 관리지침 준수 및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자 주의 조치
- ② △회계·인사담당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한 통신비 지원, △매년 임원 100만원, 직원 35만원 이내에서 건강검진비 지원을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으로 지적, 개선을 권고

한국벤처투자는 중소기업부의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①공용차량 사용 및 관리 부적절과 관련해서는 관련자 주의조치를 완료했고, ②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와 협의 후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행결과 및 이행계획을 중소기업부에 통보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⁵²⁾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기관등의 장은 자

5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감사결과와 통보 및 처리) ① 중앙행정기기관등의 장(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24조, 제25조, 제32조 및 제34조에서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체감사를 종료한 후 처분 또는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자체감사 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벤처투자 「차량관리지침」 제3조의1에는 전용차량은 임원의 업무수행과 출·퇴근 및 기타 대내·외 공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7조⁵³⁾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의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도와 행정안전부장관을,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각각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감사과정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5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7조(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 ①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퇴직금, 임직원 자녀의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의 지급, 휴가·휴직제도 등)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②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하여 지출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이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13.12.11)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하거나 그 예산을 감액한 경우, 이를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하거나,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를 증액 편성할 수 없다.

④공공기관은 복리후생비 예산 편성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기계약직과 기존 직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용차량 관련

한국벤처투자의 전용차량 및 업무용차량의 하이패스 사용기록 및 차량운행 일지를 검토한 결과 차량운행일지에 기재되지 않은 휴일(6일)에 대한 차량 운행이 확인 되었다.

< [표 62] 한국벤처투자 차량 휴일사용 내역(운행일지 미기재) >

연번	구분	출자IC	이용일자	비고
1	감사 전용차량	서수지	2020.10.10	토
2	감사 전용차량	서수지	2021.03.06	토
3	감사 전용차량	서수지	2022.03.09	수(대통령선거)
4	대표이사 전용차량	판교	2020.10.02	금(추석연휴)
5	대표이사 전용차량	판교	2021.02.27	토
6	사내이사 전용차량	서수지	2020.10.09	금(한글날)

② 복리후생제도 관련

한국벤처투자는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대해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과 유사하게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이후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 건강검진 시행과 관련된 내부 품의문을 보면 매년 검진대상을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 하고 있고, 검진비용은 임원의 경우 최대 100만원, 직원의 경우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으로 지적한 건강검진비 지원 기준과 유사한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가 이행한 사항이 미흡한 것이다.

한국벤처투자는 2018년 종합감사 당시 임직원 중 회계·인사담당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처분요구에 따라 통신비 지급 대상에서 공무원직을 제외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2018년 당시 공용차량 주말사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 및 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약 110건의 적발건수가 있으나, 이후 관련자들을 주의조치하고 관련 문화가 정착한 상태입니다.

대표이사 100만원 이내 건강검진의 경우, 건강검진 품의문 확인결과 ‘복지후생 운영지침 제3조(지급기준)은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로 사실상 대표이사 개별 의사로 상한의 제한이 없었으나, 2020년 최대 100만원까지의 상한 기준을 수립하여 개별 의사로 인해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조치할 사항】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께서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공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1. 업무 개요

한국벤처투자는 감사대상기간 동안 1,0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을 223건 체결하였고, 그중 183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제26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2항⁵⁴⁾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 「계약사무처리지침」 제2조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한국벤처투자 감사대상기간 동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되는 수의계약 10건을 비교견적만을 통해 체결하였다. 해당 수의계약 목록은 다음과 같다.

54) 「국가계약법」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표 63] 전자견적 미실시 수의계약 내역 >

연 번	계약명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원)	업체명
			시작일	종료일		
1		2020-05-29	2020-05-29	2020-08-31	56,545,455	
2		2020-06-16	2020-06-22	2020-09-06	74,552,000	
3		2020-06-22	2020-06-23	2020-09-06	46,995,455	
4		2020-06-29	2020-07-03	2020-09-06	77,330,000	
5		2020-07-20	2020-07-20	2020-09-06	75,180,000	
6		2020-11-03	2020-11-03	2020-11-03	28,650,000	
7		2021-11-18	2021-11-18	2021-12-09	88,000,000	
8		2022-05-26	2022-05-26	2022-07-25	96,800,000	
9		2022-07-15	2022-07-15	2022-11-30	92,966,231	
10		2022-09-16	2022-09-16	2022-10-15	109,600,000	

【관계기관 의견】

한국벤처투자는 향후 앞으로 계약 체결 시 위의 사항을 주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께서는

앞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해놓은 기준 금액 이상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1. 업무 개요

한국벤처투자는 업무(서비스)를 목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수집·이용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지침」을 수립하였고,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중소벤처기업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의거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정보보안관리지침」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타 공공기관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한국벤처투자는 분산된 벤처투자 정보를 통합하고, 입력 및 자료산출 방식의 일원화 추진 등 벤처투자 관리 선진화를 위해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VICS)을 2016년 10월부터 [표-64]와 같이 구축 운영⁵⁵⁾하고 있다. 그리고 출자사업/투자사업 소개, 발간자료 공개, 입찰/계약정보 등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표홈페이지를 [표-65]와 같이 구축 운영⁵⁶⁾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는 전산통합유지관리비용으로 연간 10억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두 가지 주요 시스템에 일평균 방문자 수는 1천명에 달한다.

< [표-64]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 정보 >

시스템명	URL	공인IP	기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VICS)			

55) VICS 일평균(기준 11월 평균 로그인) 방문자 수는 522명이며, VICS 운영(상주인력 7인)을 포함한 전산통합유지관리 비용은 2년간 1,971백만원

56) 홈페이지 일평균(기준 2022.1~10월 평균) 방문자 수는 411명이며, 1년 유지관리 비용은 6백만원

< [표-65] 한국벤처투자 대표홈페이지 정보 >

시스템명	URL	공인IP	기타
한국벤처투자 대표홈페이지	www.kvic.or.kr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종합 정보시스템(VICS) 등 대내·외 정보시스템을 외부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내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표-66]과 같은 85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벤처투자는 「전산업무규정」, 「전산업무지침」, 「보안업무지침」, 「정보보안관리지침」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관리·운용하고 기관 내에 마련된 전산실(전산사무실, 주전산기실)을 두고 [표-67]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을 통제하여 내부정보가 외부로 승인 없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표-66] 한국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 정보>

구분	정보보안	네트워크	내부 업무시스템	대외서비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합계
수량	35	15	16	14	5	85

< [표-67] 한국벤처투자 보호구역 요약표(기준: 2022.11.9.)>

No.	위치	구역명	구역 등급	통제장치	비고
	지하1층	방재실	제한구역	○	
	3층	전산사무실	제한구역	○	
		주전산기실	통제구역	○	
	5층	보존서고	통제구역	○	

2. 법령 등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지침」 제5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활동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연 1회 시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보안관리지침」 제6조(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에 따르면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관련 규정·지침 등을 제·개정하고 정보보안업무 지도·감독 및 정보보안 감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⁵⁷⁾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또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57)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되기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벤처투자 종합 정보시스템”을 보호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서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보안관리지침」 제6조제 3항 정보보안업무 지도·감독, 정보보안 감사 및 심사분석, 제4항 전산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의 등의 보안관리에 따라 전산실에서 운영되는 정보보안 장비에 대해 운영 및 현황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제15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제16조(정보보안감사등), 제33조(전자우편 보안대책), 제34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을 통해 내부정보의 승인 없는 유출을 방지하고, 관련시스템을 통해 책임추적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0조(재난방지)에 따르면 재해재난 복구 대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산업무규정」 제10조(전산실 보호)에 따르면 전산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을 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산업무지침」 제16조(전산실 자산관리방법), 제17조(전산실 출입관리)에서 전산실의 안정적 운영·관리하기 위해 비인가 정보기기 및 비.인가자의 출입관리를 엄격히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지침」 제16조(보호구역의 설정)에 따르면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보호구역의 출입통제), 「보안업무지침」 제17조(전산실 출입관리)에서 전산실의 안정적 운영·관리하기 위해 비.인가자의 출입관리를 엄격히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제17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에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지침/정보보안관리지침 이행 준수 미흡

가-1. 개인정보보호협의회 미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지침」 제9조(개인정보보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위원장으로, 간사 4명을 구성한 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내부 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협의회의 역할은 [그림-1]과 같다.

< [그림-1] 한국벤처투자 개인정보보호협의회 권한 및 역할 >

제10조(개인정보보호협의회 권한 및 역할) 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회사 전체에 걸쳐 동등한 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안의 조정·심의 및 의사결정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논의한다. [개정 2021.03.16.]

1. 회사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심의 및 승인
2. 회사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추진실적 심의
3. 회사 개인정보보호 추진방향 심의
4. 기타 회사 개인정보보호 관련사안의 검토, 조정, 심의 및 승인

가-2.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에서 필수 의무사항 누락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지침」 제15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사항 11개가 명시되어 있다.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공공기관 편”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되어야 하는 의무 및 권장사항은 20개 이고, 한국벤처투자는 이 중 [그림-2]와 같이 3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다.

< [그림-2]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공공기관 편 -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구분	기재사항	
1	제목 및 서문	의무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의무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의무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의무
5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의무 해당시 누락
6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권장 해당시
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의무 해당시
8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의무 해당시
9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의무
10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의무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의무
12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의무 해당시
13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의무 해당시
1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의무
15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의무
16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의무 누락
17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권장
1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권장 해당시 누락
1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의무
20	그밖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권장 해당시

또한, 「정보보안관리지침」 제46조(정보통신망 자료 보안관리)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IP 할당현황”,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등은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지만 감사결과 [그림-3]와 같이 관련 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그림-3] 대외비로 관리되지 않는 네트워크 구성도 >



가-3. 개인정보보호협의회 미운영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내부관리 계획」 제14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에서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벤처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점검 업무를 통합 유지보수 업체인 (주)AAA에서 수행하여 보고 및 점검⁵⁸⁾받고 있으나 [그림-4]와 같이 접속기록 화면 전체 캡처가 아닌 일부분 캡처하여 점검에 미흡함을 확인하였다.

< [그림-4] 외주 상주 개발자가 제출한 접속기록 점검내역 >



58) 외주 상주 개발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가-4.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 점검·관리 미흡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으로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내부관리 계획」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7항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장 감사를 통해 연내 수행해야 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벤처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고 필요한 보안조치 적용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하지만 관련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개인정보내부관리 계획」 점검부분 위탁사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을 확인하였다. 월별정기보고서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기술된 내용이 한국벤처투자의 내부관계획과 적합하지 않는점, 개인정보 접근로그 점검에 대한 근거(출처) 확인 불가능한 점, 개인정보처리자 계정관리가 미흡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

나. KVIC 홈페이지, VICS 시스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부적정

나-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관련 부적정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 “가입신청” 시 [그림-5]과 같이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표홈페이지-민원종합-온라인 신고하기 화면에서 [그림-6]와 같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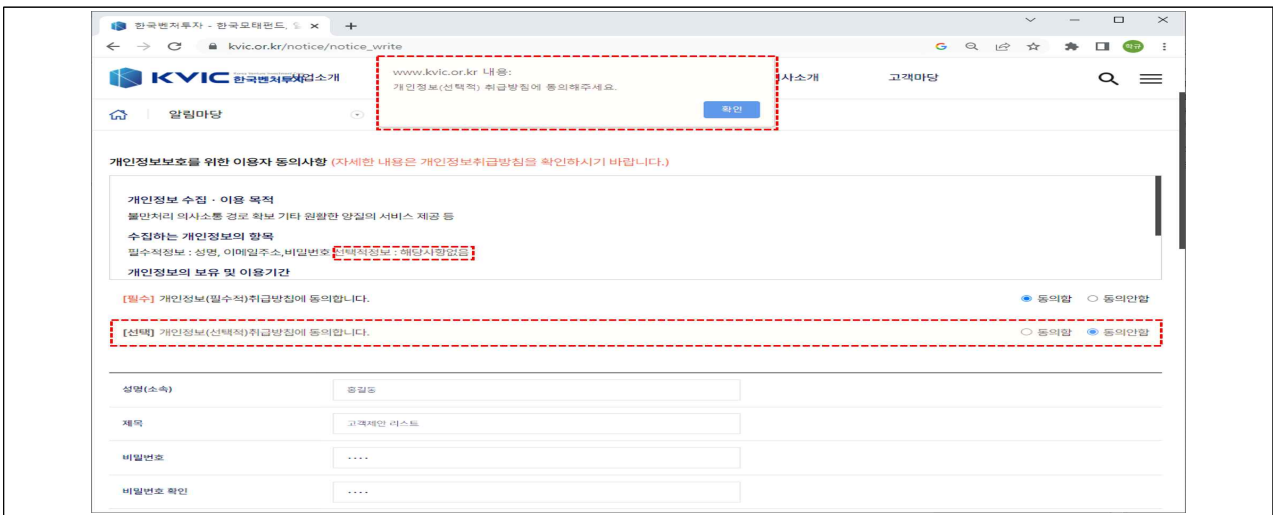
< [그림-5]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 가입신청 시 개인정보 입력화면 >

< [그림-6] 대표홈페이지-민원종합-온라인 신고하기 화면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되지만, 대표홈페이지-고객혁신제안-신청 화면에서 [그림-7]과 선택사항을 “동의안함”으로 체크할 경우 다음 단계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 추가로 “선택정보:해당사항없음”으로 고지하고 있으나, 선택정보 동의를 받고 있다.

< [그림-7] 대표홈페이지-민원종합-온라인 신고하기 화면 >



나-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① 「개인정보 보호법」 하위 규칙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 하여야 한다.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은 [그림-8]과 같이 로그인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입력 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송신하는 과정에서 암호화를 하지 않고 있다.

< [그림-8]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 웹서버에 SSL을 적용하지 않은 화면 >



② 「개인정보 보호법」 하위 규칙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 업무를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겨야 하나 한국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 경우 [표-68]과 같이 일부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있다.

< [표-68]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 접속기록 현황 >

(기록남김 : ○, 남기지 않음 : X)

구분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개인정보취급자 (웹 접속기록)	○	○	○	○	X
개인정보처리자 (DB 직접 접속)	X	○	X	○	○

③ 「개인정보 보호법」 하위 규칙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4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한 계정(식별자)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벤처투자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주)AAA에 위탁하고 있다. 상주하고 있는 외주 개발자는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한 개인정보처리자 이나, 개발자별 계정을 생성하지 않고 [그림-9]와 같이 공용 계정(USVI)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 [그림-9]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자 공용 계정 >

	USERNAME	USER_ID	CREATED
14	USVI_SEL	93	2016-05-19 11:46:25
15	USVI_APP	92	2016-05-19 11:45:22
16	DAMO	96	2016-07-14 14:19:27
17	USVI	91	2016-05-19 11:44:05
18	SCOTT	83	2013-08-24 12:04:21

④ 「개인정보 보호법」 하위 규칙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6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 웹서비스 로그인 화면에서는 비밀번호 횟수 제한을 하지 않고 있고, 비밀번호가 틀렸을 경우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그림-10]과 같이 오류메시지를 상세히 출력하고 있어 “비밀번호 무차별대입 공격(Brute Force)”에 취약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 [그림-10]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 웹서비스 로그인 화면 >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VICS)

아이디: admin

비밀번호: []

로그인

아이디 기억하기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가입신청](#)

- * 사용자정보는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가입신청](#) 으로 처리 하세요.
- * 비밀번호 분실 시 [비밀번호 찾기](#) 를 실행하세요. (전화문의 불가)
- * 아이디 분실 시 [아이디 찾기](#) 를 실행하세요.
- * 기존 관리자 퇴사 등의 이유로 인해 VICS 사용자 신규 추가 시 [가입신청](#)으로 실행하세요.(VICS 로그인 불가 시)
- * VICS를 사용 중인경우 [사용자추가는 VICS의 사용자관리\(1009\)](#) 에서 가능합니다.(VICS 로그인 가능 시)
- * 사용자정보 찾기로 로그인 불가 시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E-MAIL : datacenter@k-vic.co.kr / TEL : 02-2156-2470, 2478~2480

<< [플자업선](#)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하세요. >>

* 온라인접수 [k-vic.co.kr](#)
* 현장접수 및 [k-vic.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한국벤처투자빌딩 Tel : (02)2156-2000
Copyright(C) 2020 KVIC. All rights reserved

⑤ 「개인정보 보호법」 하위 규칙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지만, 한국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은 접속기록 점검에 대한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나-3.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공개 및 현행화 미흡

① 「개인정보 보호법」 하위 고시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은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②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에 웹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가입신청”에서 모태출자사업신청(개인), 개인투자조합운용사(개인)을 선택해야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내용은 [그림-11]과 같으며 내용 중 아래와 같은 현행화 미흡을 확인하였다.

첫째,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등)”은 2020.2.11에 삭제된 법 조항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은 2020.8.11 삭제된 법 조항이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누락, (주)AAA 수탁자이나 관련 내용이 누락,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누락, 한국벤처투자는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항목을 게재하지 않고 있다.

셋째, “필수”와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전체동의”를 받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3자 제공하고 있으나 별도 동의가 아닌 전체동의로 갈음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집 동의를 받고 있다.

< [그림-1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화면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등)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6조제1항 및 별지3호(투자확인서 신청서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서 업무집행조합원의 신용상태 확인
- 개인투자조합 등록시 조합원명부 및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및 투자자명세표 확인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조합원명부, 투자자 명세표,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 선택항목**
-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학력, 경력사항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10년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임으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등)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6조제1항 및 별지3호(투자확인서 신청서 구비서류)에 의해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선택항목 : 학력, 경력사항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 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신용도 판단(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체무가 1천만원 초과 여부)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등)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6조제1항 및 별지3호(투자확인서 신청서 구비서류)에 의해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성명, 주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전체동의함

③ 벤처투자 대표홈페이지에서도 개인정보 처리보유 법적 근거 오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중 필수 항목 누락,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고지 위반, 개인정보 파기절차 누락, 관리책임자 현행화 미흡, 권익침해 구제방법 현행화 미흡 등 다수사례를 확인하였다.

특히 [그림-12]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는 정보가 대부분 현행화되지 않았다.

< [그림-12] 대표홈페이지 개인정보/영상정보처리방침 제11조 >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국벤처투자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벤처투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안전행정부 운영) → 행정안전부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별도로 존재 www.privacy.go.kr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02-2100-3394 → 02-405-5101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나주본원]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주소: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www.privacy.go.kr로 통합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www.privacy.go.kr로 통합
- 전화: (국번없이) 118
- 주소: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www.netan.go.kr → <http://cyber.go.kr>
- 전화: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https://cyberbureau.police.go.kr> 으로 통합

다.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관리 및 전산실·제한구역 관리 미흡

다-1. 정보보안시스템 운영관리 미흡

다-1-① 웹 방화벽 운영관리 미흡

웹방화벽은 벤처투자 종합 정보시스템(install.k-vic.co.kr)과 같은 대외 서비

스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 시스템이다. 감사 결과 한국 벤처투자는 웹방화벽을 구축 운영하나 한국벤처투자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벤처 투자 종합 정보시스템을 웹방화벽에 등록하여 운영하지 않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또 [그림-13]과 같이 웹방화벽에 차단 정책을 설정하지 않고 탐지모드로만 운영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웹 사이버 위협을 차단할 수 없는 상태이다.

< [그림-13] 웹방화벽 “기본 보안 정책” 화면 >



웹방화벽에 등록된 URL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그림-14]와 같이 정보보안 담당자가 현행관리를 하지 않아 현재 운영되지 않는 시스템이 등록되어있는 등 URL 등록 관리를 하지 않는 것도 확인되었다.

< [그림-14] 웹방화벽에 등록된 URL(어플리케이션) 목록 >



다-1-② 시설관리시스템(FMS, 175.209.22.24) 외부 인터넷 노출 확인

한국벤처투자 대외서비스 포트스캔 결과 시설관리시스템(FMS⁵⁹)은 서버실에 있는 장비의 상태를 체크하는 업무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그림-15]과 같이 외부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59) 시설관리시스템(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은 실제 전산환경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3D 실장도 형태의 대시보드를 통해 전산실 환경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시설 및 설비의 중단 위험을 최소화함

< [그림-15] 외부 인터넷에 노출된 FMS 시스템 >



FMS 시스템은 한국벤처투자 정보보안 시스템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고, 취약점 점검툴을 이용하여 취약점을 확인한 결과 [그림-16]와 같이 약 310개의 취약점이 있는 취약한 시스템으로 확인되었다. 대외 공개 제거 등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 [그림-16] FMS 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 >



다-1-③ 도메인네임시스템(DNS) 현행화 미흡

한국벤처투자는 인터넷망, 업무망에 각각 DNS⁶⁰⁾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다. [그림-17]와 같이 DNS 시스템에 많은 DNS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중에 있으나, 담당자가 운영 관리를 하지 않아 필요 없는 DNS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채 신규 DNS 정보만 추가되는 등 시스템이 현행화 미흡을 확인하였다.

< [그림-17] 인터넷망 DNS 서버 구성현황 >



다-1-④ 망간자료전송시스템 운영관리 미흡

한국벤처투자는 망분리를 하였고 망간 자료전송 시 망간자료전송시스템을

60) 도메인네임시스템(DNS, Domain Name System)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을 IP주소로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속된 규칙을 공유

통하여 자료를 송·수신 하고 있다. 망간자료전송시스템을 감사한 결과 업무망에서 인터넷망 또는 업무망에서 인터넷으로 연동되는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현재는 사용하지 않은 정책도 다수 확인되었지만 망간자료전송시스템 담당자는 그 현황을 현황관리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그림-18]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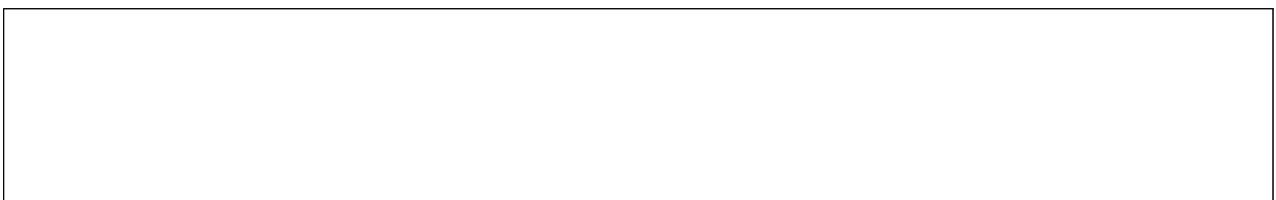
다-1-⑤ 비인가 USB 운영관리 미흡

한국벤처투자는 비인가 USB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망 PC는 “비인가 USB 읽기/쓰기 차단” 정책을 사용하고 인터넷 PC는 “비인가 USB 쓰기 차단 / 읽기 허용” 정책을 사용한다.

비인가 USB 사용현황을 감사하던 도중 [그림-19]과 같이 PC 유지보수를 위해 상주하고 있는 외주 용역인력의 인터넷 PC에서 “USB 읽기/쓰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이는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례였다.

PC 유지보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비인가 USB를 사용할때에는 지정된 USB만 사용하도록 인가를 해줘야 하며, 정보보안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USB를 사용하는지 점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그림-19] 외주 PC 유지보수 상주 인력 인터넷 PC 매체제어 정책 >



다-1-⑥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 임시 비밀번호 동일하게 발급

한국벤처투자 종합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감사한 결과 [그림-20]과 같이 패스워드가 동일한 여러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스템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용자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install.k-vic.co.kr)에 최초 가입을 하면 “임시 비밀번호”가 발행되는 이 “임시 비밀번호”가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발행된다는 것이다. 시스템에 최초 가입한 이용자는 임시 비밀번호를 받고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서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가 많이 존재하였다.

최초 가입한 이용자는 발행된 임시 비밀번호를 알기 때문에, 만약 다른 이용자의 ID만 알고 있다면 다른 이용자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한 취약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시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발행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그림-20] 종합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동일한 이용자 패스워드 >



다-2. 전산실 및 제한구역 관리 미흡

다-2-① 전산실 출입관리 미흡

전산실(전산사무실, 주전산기실)의 출입통제를 위해 전산사무실을 제한구역, 주전산기실을 통제구역으로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출입인가자의 출입을 기록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사원카드와 지문인식을 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출입통제(카드+지문)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ADT캡스(무인경비전문기업)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나, 2022.10.28.부터 11월22일 감사시점까지 출입통제 컴퓨터의 고장을 방치하였다.(12.6일 조치완료)

다-2-① 전산실 출입관리 미흡

전자우편 및 휴대용 저장장치(USB저장소)를 통해 정보의 유출이 통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출력된 문서를 디지털 복합기의 문서스캔기능을 통해 저장위치를 비인가 휴대용 저장장치로 저장하는 경우 정보의 유출을 막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 추적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정보기기의 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나, [그림-21]와 같이 유지관리(보수) 계약관계에 있는 '(주)AAA'의 상주 인력들의 정보기기가 적절한 인가 절차 없이 반입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 [그림-21] 주전산기실(통제구역) 테블릿PC >



다-3. 핵심정보자산에 대한 재해복구체계 수립 부적합

한국벤처투자는 재해·재난에 대비를 위해 백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스템 별 백업복구에 대한 RTO(목표복구시간), RPO(목표복구시점)를 훈련과 위험평가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지만 해당 내용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있다. 백업된 매체를 규정에 따라 소산백업(vaulting backup)⁶¹⁾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위

치, 방안, 보안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1회/년 소산하고 있어 재해 복구시 22년04월28일 데이터로 복구가 가능하며, VICS에서 관리되는 펀드출자 관련정보, 조합운영등에 필요한 보고정보가 모두 재해 시점이 아닌 소산이전 시점으로만 복구가 가능한 상태이다.

정보시스템의 위험관리를 위해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식별된 시스템에 대해 위험평가를 통해 핵심정보자산을 지정하도록 해야 하지만, 정보자산에 대한 식별, 위험등급의 산정 및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법에서는 세부절차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부 규정에서 ‘~해야 한다.’ 라고 규정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절차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관련 내부규정에 대한 벌칙 조항의 개정과 재해복구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관계기관 및 관계자 의견】

한국벤처투자 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IT서비스팀의 인적구성이 시스템 개발 역량에 집중되어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전문 역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존 직원 교육, 신규 전문인력 확보, 전문기관 협력 등 정보보안 분야 역량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며, 상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공개 및 현행화에 미흡한 관련자를 주의

61) 소산백업(vaulting backup)이란 백업된 데이터를 여러 비상상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해 두는 것을 말한다

조치하시고, (주의)

핵심정보자산에 대해 재해복구 매뉴얼을 제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또한 「개인정보 보호·관리지침」 및 「정보보안관리지침」 등 이행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정상화, 누락된 필수 의무사항 확인, 정보통신망 자료
대외비 사항 관리 및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등 실태 점검·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
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담당자 교육 등 주
기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정보보안관리지침」, 「전산업무규
정」, 「보안업무지침」에 맞춰 정보보안시스템 운영관리 및 전산실·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IV. 처분 요약

1. 처분요구사항(총괄) : 주의·경고 8건(개인 3, 기관 5), 시정 1건,
개선요구 3건, 권고 1건, 통보 8건

구분	건명	관계기관	처분요구		조치 기한
			기관	개인	
1	출자예산 배정 방식 개선 필요	한국벤처투자	통보	-	'23년5월
2	한국벤처투자 "엔젤 모펀드" 관 리보수 수취 구조 개선 필요	"	개선요구	-	'23년5월
3	정·현원 관리 부적정 등 인사운영 미흡	"	통보 개선요구	-	'23년5월
4	법령상 의무고용 준수 미흡	"	통보	-	'23년5월
5	한국벤처투자 "성과급 지급" 관련 개선 필요	"	통보	-	'23년5월
6	교육훈련비 집행 부적정	"	주의	-	'23년5월
7	초과근무수당 운영 부적정	"	통보	-	'23년5월
8	지역사무소 운영 부적정	"	개선요구	-	'23년5월
9	해외사무소 운영 부적절	"	통보 시정 주의	-	'23년5월
10	경영정보공시 관리 소홀	"	주의	-	'23년5월
11	외부강의 등 신고 부적정	"	-	주의	'23년5월
12	한국벤처투자 내부규정 개선 필요	"	통보	-	'23년5월
13	2018년 종합감사 처분요구 사항 이행 미흡	"	주의	-	'23년5월
14	수의계약 전자견적 미실시	"	주의	-	'23년5월
1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 무 운영 부적정	"	통보 권고	주의2	'23년5월

2. 개인 처분 명세 : 주의 3명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처분계획			지적내용
				주의	경고	징계	
1				○			외부강의 신고 의무 위반
2				○			정보보안 관련 업무 처리 미흡
3				○			정보보안 관련 업무 처리 미흡